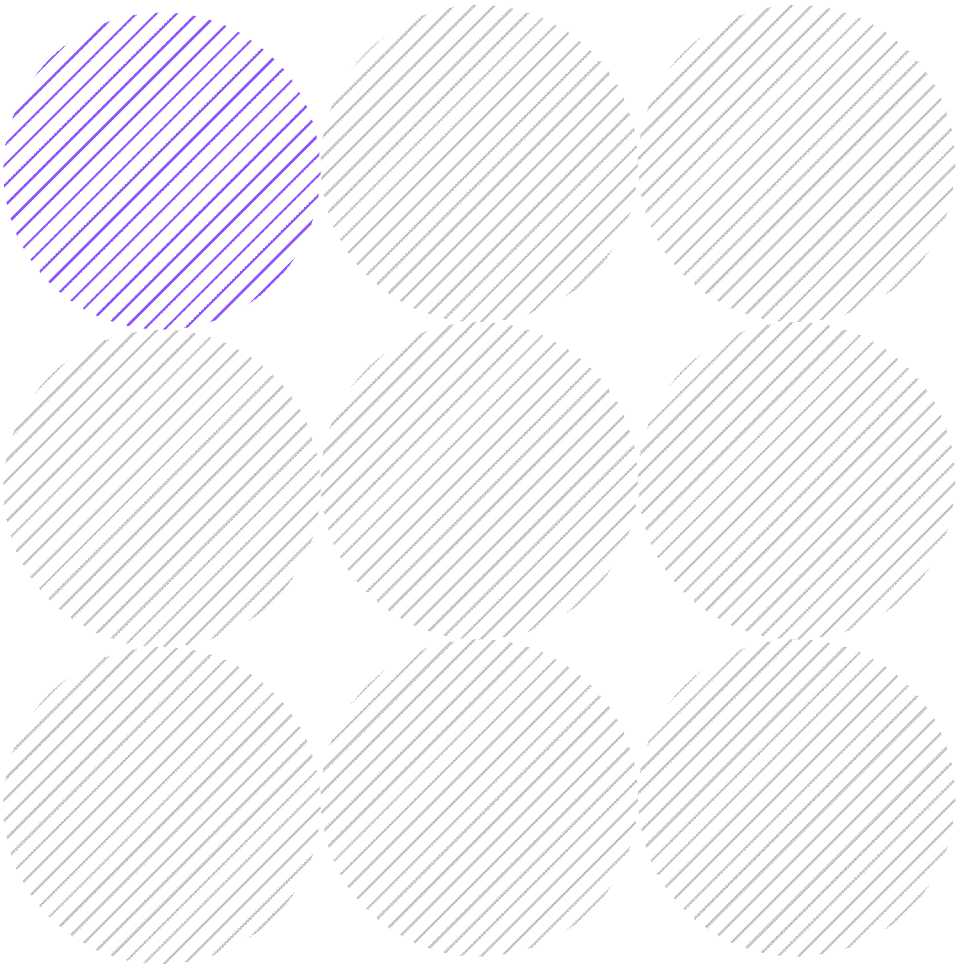
2026.09

2026년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최 종 보 고 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제출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6년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발주처	인천광역시장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윤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CONTENTS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 4
1) 연구 범위 ····· 4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및 평가 일정 ····· 5
1) 연구 방법 ····· 5
2) 평가 일정 ····· 6

Ⅱ. 주요재정사업 평가 ····· 15
1. 평가 개요 ····· 17
1) 개요 ····· 17
2) 평가 수행 체계 ····· 19
2. 평가 기준 ····· 21
1)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분석 ····· 21
3) 평가지표 및 배점 재설계 ····· 24
3. 평가 결과 ····· 26
1) 평가 대상 사업 현황 ····· 26
2) 성과평가 결과 ····· 31
3) 주요재정사업 평가 분야별 점수 배점 ····· 34

Ⅲ.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 41
1. 운용평가 개요 ····· 43
1) 지방보조금 개요 ····· 43
2) 운용평가 근거 ····· 47
3) 운용평가 수행 체계 ····· 49
2. 지방보조사업 운영 현황 ····· 50
1) 2026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 50
2) 타 지자체 비교 ····· 52
3) 지방보조금의 교부세 등 영향 검토 ····· 55

CONTENTS

3. 운용평가 기준 ····· 57
1) 행정안전부 운용평가 기준 분석 ····· 57
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설계 ····· 61
4. 운용평가 결과 ····· 65
1) 운용평가 대상 사업 현황 ····· 65
2) 성과평가 결과 ····· 71
3) 유지필요성 평가 ····· 77

Ⅳ. 개선방안 및 제언 ····· 83
1. 주요재정사업 운용 제언 ····· 85
1) 사업계획 단계 ····· 85
2) 사업관리 단계 ····· 86
3) 성과/환류 단계 ····· 87
2. 지방보조사업 운용 제언 ····· 90
1) 지방보조금 편성 ····· 90
2) 지방보조금 집행 ····· 92
3) 지방보조금 정산 및 운용평가 ····· 94
4) 2027년 지방보조금 운영 변경 사항 ····· 96
3. 전문가 자문의견 및 제언 ····· 99
1) 개요 ····· 99
2) 전년도 평가 결과 환류 반영 현황 ····· 99
3)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관한 의견 및 제언 ····· 103
4) 향후 지표 설계 관련 보완점 ····· 106

부록. 전문가 자문의견 원문 ····· 107
1. 강병구 교수 ····· 109
2. 윤홍식 교수 ····· 113
3. 박찬열 연구원 ····· 119

CONTENTS

표 목차

[표 1]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일정 및 흐름 ·····6
[표 2] 평가지표별 점수 등급 ·····18
[표 3] 실국(실과)별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19
[표 4] 주요재정사업 평가지표별 평가표 ·····22
[표 5]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표 ·····25
[표 6]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26
[표 7] 예산 규모별 사업수 및 예산액 ·····27
[표 8] 실국별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수 ·····28
[표 9] 실·국별 면담 대상 사업수 ·····30
[표 10] 2025회계연도 실국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31
[표 11] 주요재정사업 중 투자사업 평가 결과 ·····33
[표 12] 주요재정사업 중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 ·····33
[표 13]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단계별 점수 ·····34
[표 14]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단계별 백분위 환산 점수 ·····35
[표 15] 사업계획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36
[표 16] 사업관리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38
[표 17] 성과/환류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40
[표 18] 지방보조금 종류별(예산과목별) 분류 ·····43
[표 19]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조항 ·····47
[표 20] 「지방보조 관리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조항 ·····48
[표 21]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 및 활용 ·····48
[표 22] 인천광역시 2026회계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본예산) ·····50
[표 23]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 비율 현황 ·····51
[표 24] 2026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특별/광역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52
[표 25] 2026회계연도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53
[표 26]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증감률 현황 ·····54
[표 2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55
[표 28] 지방재정분석의 지방보조금 지표 현황 ·····56
[표 2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 ·····58
[표 30]「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7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 ·····60
[표 31] 인천광역시 성과평가 지표 ·····63
[표 32] 인천광역시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64
[표 33]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현황 ·····65
[표 34]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66
[표 35]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평가 결과 ·····68
[표 36] 성과평가 ¦ 사업계획 분야 평가 결과 ·····72
[표 37] 지방보조사업 사업관리 분야 평가 결과 ·····74
[표 38] 지방보조사업 사업성과 분야 평가 결과 ·····75
[표 39] 지방보조사업 감점 항목 평가 결과 ·····76
[표 40]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78
[표 41]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사업관리 분야 ·····80

CONTENTS

[표 42]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82
[표 43] 사업계획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85
[표 44] 사업관리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86
[표 45] 성과/환류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88
[표 46] 주요재정사업 평가 항목 비교 (행정안전부 vs 2025 인천) ····88
[표 47]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성과평가 기준) ····90
[표 48]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96
[표 49]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97
[표 50]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98
[표 51]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99

그림 목차

[그림 1]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 담당자 면담 모습 ····7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평가 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 및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도비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반복·증액 추세가 재정 건전성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단순 형식적 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실질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 또한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고도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최종 결과 수용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구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환류 체계를 확립함.

○ 평가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정성 평가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필요성·효율성·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함. 중앙정부의 평가 강화 방향성을 고려한 최종결과 도출로 지방자치의 신뢰도를 향상함.

○ 결과적으로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재정 경직성·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이 아닌, 공적 가치 유발, 지역사회 발전, 주민 만족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도출함.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과업 대상

○ 25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170건 및 지방보조사업 338건

□ 내용적 범위

○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 사업별 평가 및 현장 실사 시행 (지방보조사업은 유지필요성 평가 포함)

○ 사업별 세출구조 조정(안) 및 개선·관리 방안 제안

○ 인천광역시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예산 현황 분석

○ 정책환류 체계 확립 및 재정 건전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내용

○ 주요재정사업 개요 및 평가 기준 점검

○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개요 및 운영 현황 분석

○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기준 점검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 인천시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개선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및 평가 일정

1)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사업 관련 자료, 문헌 및 논문 등 조사

○ 통계 분석 - 중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방향 제안

○ 면접 조사 - 평가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숙의과정을 통한 방향 제시

2) 평가 일정

[표 1]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일정 및 흐름

주요재정사업	일정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확정 및 자료 수집	4월 10일 ~ 5월 15일	평가 대상 확정 및 자료 수집
운용평가 지표 구성 1.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 특성 분석 2. 사업 특성 반영 지표 설계	4월 20일 ~ 4월 24일	운용평가 지표 구성 1. 운용평가 대상 사업 특성 분석 2. 대상 사업 통계목별 특성 분석 3. 지방보조금 특성 반영 지표 구성
평가단 구성 및 서면 평가 1. 분야별 전문 평가단 구성 2. 평가단 평가 지표 숙지 회의 3. 전문가별 서면 평가 4. 서면 평가 결과 숙의	4월 27일 ~ 5월 22일	평가단 구성 및 서면 평가 1. 분야별 전문 평가단 구성 2. 평가단 평가 지표 숙지 회의 3. 전문가별 서면 평가 4. 서면 평가 결과 숙의
부서 면접 조사 1. 미흡 이하 사업 담당자 면담 2. 평가 초안 확정	5월 28일 ~ 6월 19일	부서 면접 조사 1. 미흡 이하 사업 담당자 면담 2. 평가 초안 확정
평가 의견 부서 회람 1. 부서별 평가 초안 회람 2. 부서 의견 반영 최종 평가 확정	6월 22일 ~ 7월 20일	평가 의견 부서 회람 1. 부서별 평가 초안 회람 2. 부서 의견 반영 최종 평가 확정
최종보고서 작성 1. 재정사업 운영 특성 분석 2. 운용평가 결과 분석 3. 재정사업 운용 제언		최종보고서 작성 1. 지방보조금 운영 특성 분석 2. 운용평가 결과 분석 3. 지방보조금 운용 제언

□ 부서 면접 조사 현장 모습

[그림 1]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 담당자 면담 모습

주요재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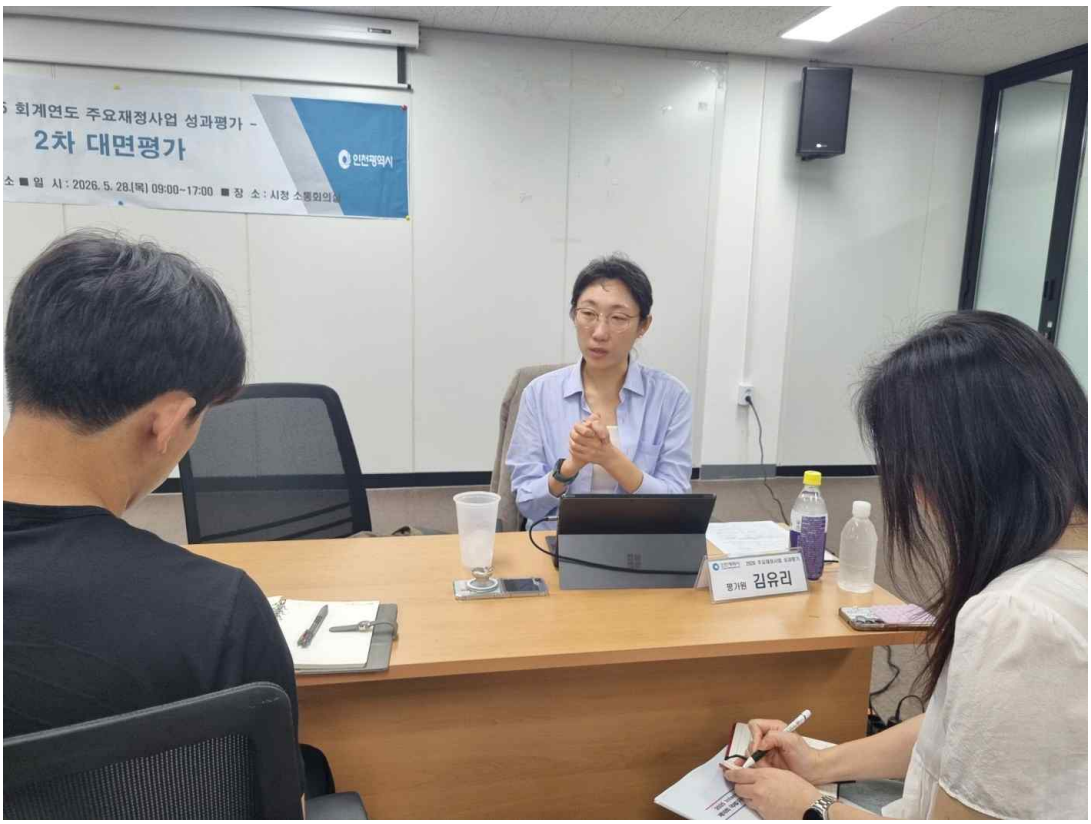
주요재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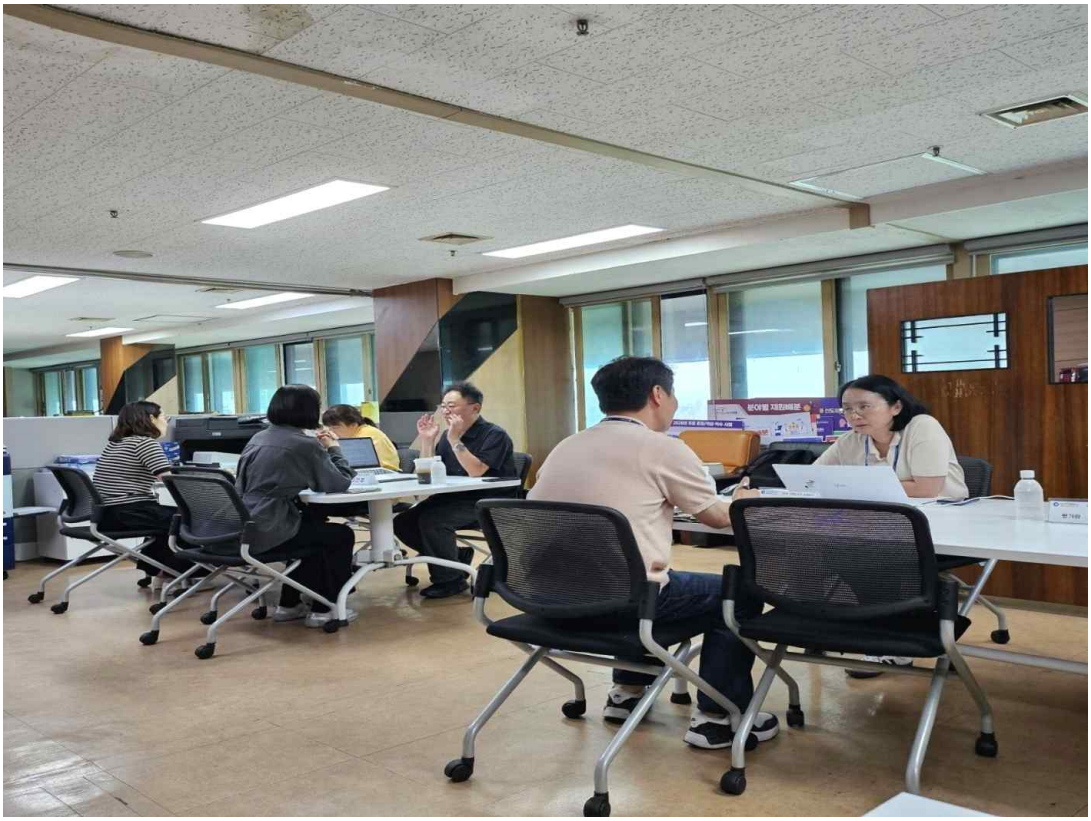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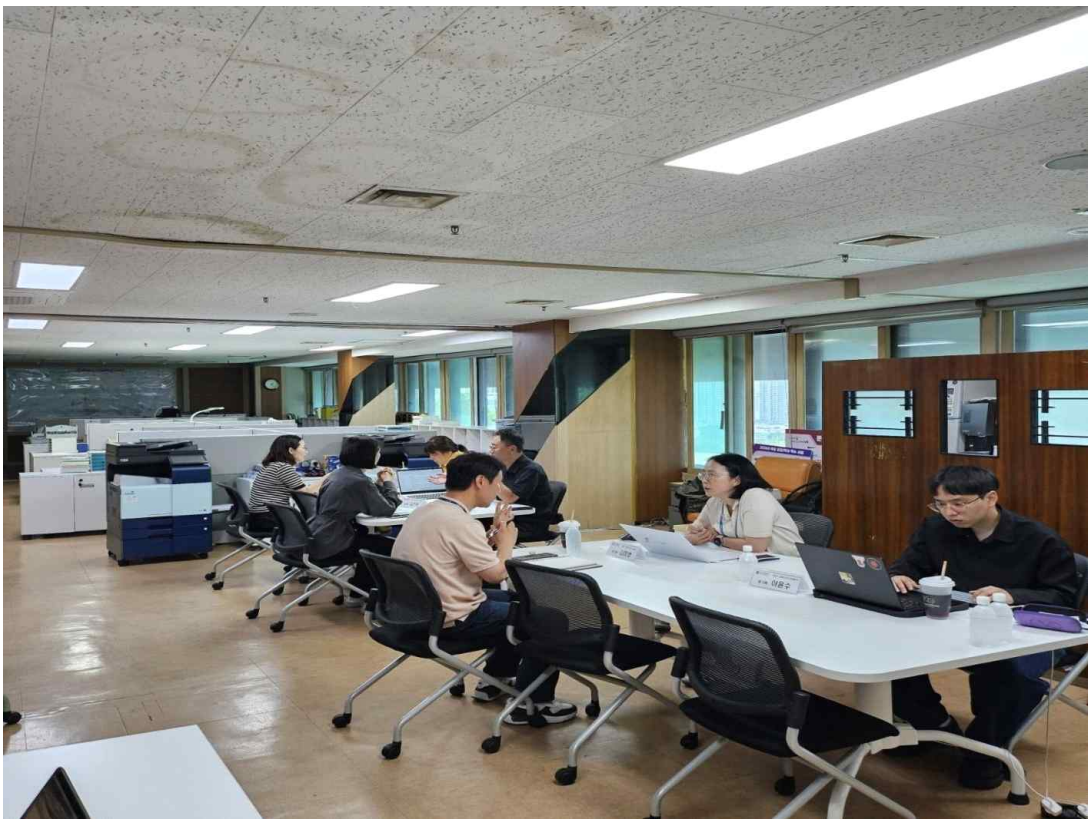
주요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1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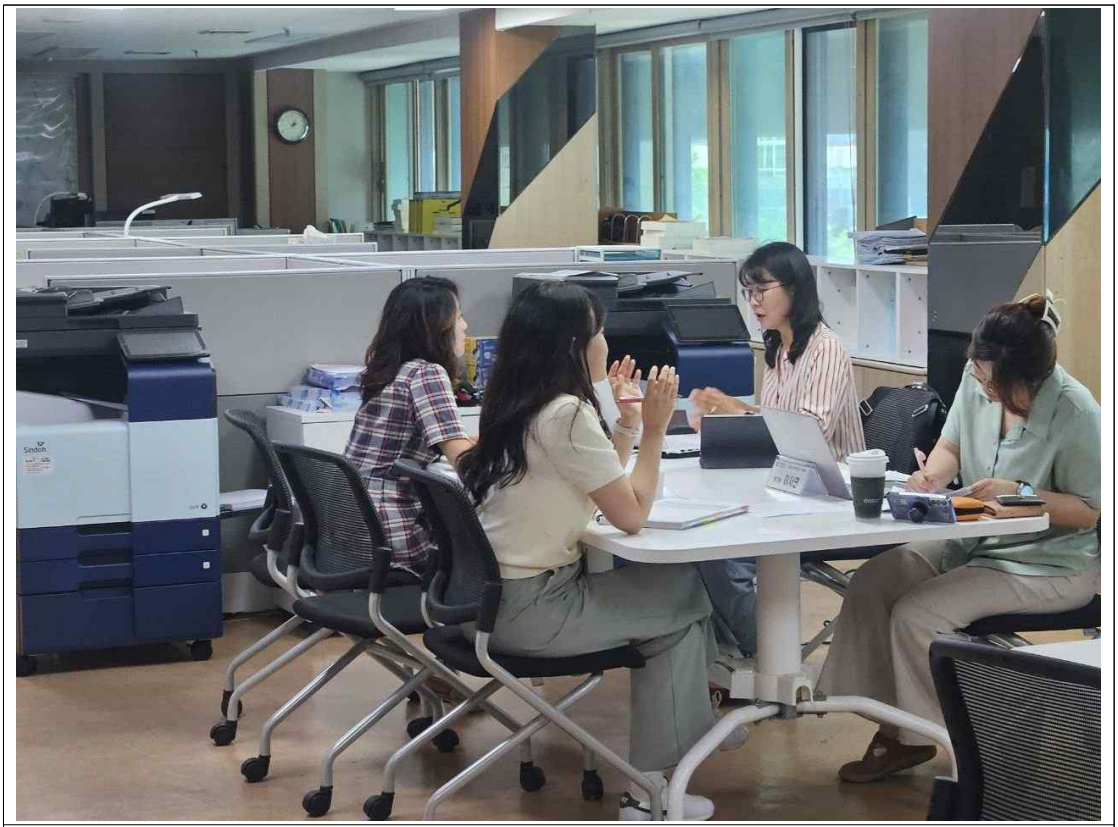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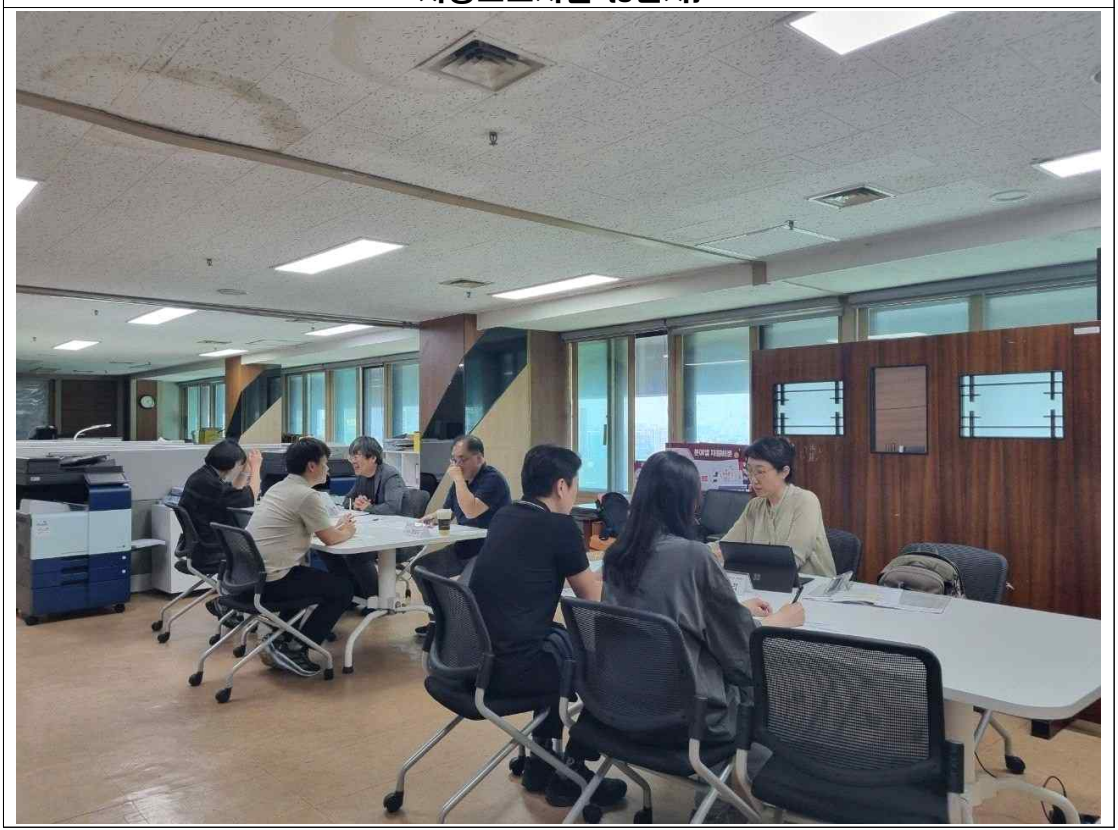
지방보조사업 (2일차)







지방보조사업 (3일차)






분야별 재원배분

Ⅱ 주요재정사업 평가

1. 평가 개요
2. 평가 기준
3. 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1) 개요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로 나누어짐.

□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운영 규정

○ (사전심사)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는 대상이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서 한정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 군·구의 신규 행사·공연·축제사업 등이 대상

○ 15명 이내 민간인 3/4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평가주체로 지역축제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이 가능

- 단,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인 경우는 사전심사 제외가 가능함

-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함

○ (사후평가)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절차는

①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 순차적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 점검을

통해 평가점수를 결정함.

②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을 하는데, 평가계획 수립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를 결정하게 됨.

③ 자체평가는 광역(실국 단위), 기초(실과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의 병행이 가능.

④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민간인 3/4이상)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이 가능함

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절차 없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평가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은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행사성 사업)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 결과는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으로 의무화. 단,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가능함

○ 평가 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해서 세부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하도록 했음.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9~80점은 우수, 79~70점은 보통, 69~60은 미흡, 60점 미만은 매우 미흡 등급을 부여함.

[표 2] 평가지표별 점수 등급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구분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 (절대평가) 완료사업을 제외한 실국(실과)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이 적용 가능하도록 했음.

[표 3] 실국(실과)별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사업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1~3	절대평가		
4	1	2	1
5	1	3	1
6	1	4	1
7	1	5	1
8	2	5	1
9	2	6	1

2) 평가 수행 체계

□ 평가 대상 및 자료수집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항에서는 평가 대상과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 · 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 (예)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재정사업 평가 제외 ②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③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④ 국·도(시)비 보조사업

○ 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자료 및 기타 사업 수행 간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함.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주요재정사업 평가 관련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서면평가를 진행함. 서면평가는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평가 점수를 득점 혹은 기준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평가자의 서면평가 이후 미흡 이하 등급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함. 객관적 상대평가를 위해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의 2~3배수의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면담은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과 진행됨.

□ 평가 종합 및 이의제기

○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종합하여 1차 평가를 마무리함. 평가 결과는 근거와 함께 담당부서에 송부되며, 이후 한 차례 서면으로 사업 담당부서의 평가 결과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함. 끝으로 이의제기 결과가 반영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함.

2. 평가 기준

1)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분석

□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평가지표 분석

○ 주요재정사업 평가지표는 2020년 11월 13일 개정 사항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로 구분 되어짐.

○ 사전심사는 신규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평가는 사후평가임. 평가 항목의 분야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및 환류 세 개로 구분함. 평가는 분야별 배점을 사업계획 20점, 사업관리 30점, 사업성과 50점으로 배정함.

○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에서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성과목표 부합(1-1, 2점), 유사·중복성(1-2, 3점), 사업 계획의 효율성(1-3, 5점)과 성과계획의 적정성(10점) 항목에서는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성(2-1, 5점), 성과목표치의 합리성(2-2, 5점)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음.

○ 사업관리는 30점 배점인데 사업 예산 집행률(3-1, 15점), 추진상황 모니터링(3-2, 5점), 문제점 해결 여부(3-3, 10점) 등에 배점하고 하고 있음.

○ 사업성과는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4-1, 30점)와 사업평가 시행 여부(4-2, 10점), 평가 및 지적사항 환류(4-3, 10점)에 배점을 해 총 50점을 부여함.

○ 행정안전부는 평가지표 및 평가 배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

[표 4] 주요재정사업 평가지표별 평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계		100	

□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표 함의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지표가 제시 되었는데, 평가지표로서 개선이 필요함. 재정사업 평가는 크게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으로는 각각의 사업 성격에 걸맞은 지표 제시가 없음.

○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성격과 목적, 운영 방식이 달라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러한 사유로 사업 유형에 맞는 운용평가 지표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배점과 관련하여 성과/환류 단계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음. 성과/환류 단계 배점은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특정 단계에 대한 과도한 배점으로 세밀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단계를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은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미비, 유사·중복사업, 사업 집행 미흡 등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성과/환류 단계 배점이 50점으로 전체 평점의 50%를 차지할 경우 해당 단계의 평가가 전체 평가를 과다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분야별 배점 기준을 준수하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평가 틀 내에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을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평가지표 및 배점 재설계

□ 평가기준 대폭 재설계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대해 인천광역시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평가 항목의 평가지표와 배점을 재설계함.

○ 사업계획 단계의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평가 배점을 수정했음. (1-1) 사업 목표의 부합성 대신 사업 추진의 근거를 평가지표로 변경. 평가 배점도 10점으로 상향함. 또한 (1-3) 사업 추진 일정의 계획성을 평가지표로 추가하여 평가 배점 2점을 반영하였음.

○ 사업관리 단계의 배점은 30점에서 35점으로 5점이 인상되었는데 (3-1) 예산 집행률 점검 지표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 것이 주요한 이유임. 그 외 평가지표와 배점에서는 변경이 없었음.

○ 성과/환류 단계의 배점은 50점에서 35점으로 대폭 인하했는데, 특히 (4-1)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지표의 배점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진 것이 해당 단계 평가 배점이 축소된 원인임. 4-1 평가지표의 경우 30점으로 타 평가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 배점이 높아 성과/환류 단계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게 부여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음.

○ 4-1 평가지표는 재정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평가 내용을 차별화해 투자사업은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 배점을 하고, 행사성 사업의 경우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에 따라 9점을 부여하고, 2단계는 참여자 만족도 또는 목표 참석율 도달에 따라 6점을 부여하였음.

○ 평가지표 외에 가점 항목을 설치해 내·외부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평가 산정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였음.

○ 행정안전부가 평가지표 및 평가 배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평가지표와 평가 배점에서 재설계가 이루어짐.

[표 5]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30점)	1. 사업계획 적정성 (20)	1-1.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위계획에 근거한 사업인가?	1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 추진 일정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계획되었는가?	2
		1-4.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 방식이 효율적인가?	5
	2. 계획 목표의 적정성 (10)	2-1. 사업(성과) 계획이 사업 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사업(성과)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5점)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5)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
		3-2.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환류 (35점)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류 (3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가점 항목		2025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외부평가가 우수사업인 경우	3
		2025년 내부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인 경우	2
계		100	

3. 평가 결과

1) 평가 대상 사업 현황

□ 평가 대상 2025년 인천시 최종예산의 1.3%

○ 2025년 인천광역시의 최종예산은 16조 2,545억원에 달하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액은 2,054.3억원으로 1.3%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6]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단위: 억원)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상 예산현액
예산액	149,430	162,545	175,035

□ 예산 규모별 사업수

○ 예산 규모별로 평가 대상 사업을 분류하면 1억원 미만 사업이 68개 40.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사업이 37개 21.8%,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사업이 31개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50억원 이상 사업이 평가 대상 사업비의 54.4%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으며,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사업은 예산액이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년도인 2024회계연도에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209건, 예산액은 3,953억원이었음. 전년 대비 39건이 감소했으며, 예산은 1,900억원가량 감액됨. 이는 전년 대비 92.5%가량 감소한 금액임.

[표 7] 예산 규모별 사업수 및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1억원 미만	68	40.0%	2,597	1.3%
5억원 미만	31	18.2%	5,623	2.7%
10억원 미만	26	15.3%	19,655	9.6%
50억원 미만	37	21.8%	65,781	32.0%
50억원 이상	8	4.7%	111,773	54.4%
합계	170	100.0%	205,429	100.0%
2024회계연도	209	100%	395,381	100.0%

□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170개

○ 2025 회계연도에 인천시가 시행한 사업 가운데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모두 170개로 투자사업이 60개, 행사성 사업이 110개임. 실국별로 평가 대상 사업수를 보면 문화체육국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미래산업국이 22개, 국제협력국이 17개 순이었음.

○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60개의 투자사업은 미래산업국이 18개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국이 10개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 수를 보임.

○ 행사성 사업 110개에서 문화체육국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협력국이 12개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 수를 보임. 그 외 상당수의 부서에서 1개 이상의 사업 수를 보였음.

[표 8] 실국별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수

(단위: 백만원)

실국명	계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계	170	205,429	60	184,198	110	21,232
대변인	3	3,387	2	3,287	1	100
민생기획관	1	10			1	10
감사관	1	25			1	25
시민소통담당관	2	282			2	282
청년정책담당관	5	9,516	3	9,386	2	130
창의도시지원단	1	45			1	45
기획조정실	4	1,340	1	1,200	3	140
재정기획관	1	42			1	42
행정국	8	2,294			8	2,294
시민안전본부	2	157			2	157
경제산업본부	9	16,932	4	15,870	5	1,062
미래산업국	22	59,091	18	58,578	4	513
환경국	7	1,962	2	1,641	5	321
교통국	1	10			1	10
문화체육국	39	20,049	10	14,391	29	5,658
보건복지국	1	14			1	14
여성가족국	6	257			6	257
국제협력국	17	9,155	5	7,275	12	1,880
글로벌도시국	5	2,316	2	2,204	3	112
해양항공국	8	5,260	4	4,785	4	475
도시계획국	5	4,988	2	4,750	3	238
도시균형국	5	1,880	1	1,719	4	161
경제청 도시디자인단	1	16			1	16
경제청 기획조정본부	9	34,100	3	27,080	6	7,020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4	28,617	2	28,417	2	200
경제청 영종청라본부	1	3,614	1	3,614		
상수도사업본부	2	71			2	71

□ 면담대상 사업

○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인천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점수가 부여된 사업 혹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을 진행함.

○ 면담 대상은 실·국별 미흡 이하 비율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해 실시하였음.

○ 면담 대상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 170개 가운데 76개 사업으로 44.1%의 사업에 대해서 면담이 이루어짐. 투자사업에서는 25개(32.9%), 행사성 사업에서 51개(67.1%)가 선정되었음.

○ 면담 대상이 가장 많은 실·국은 문화체육국으로 39개의 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17개의 사업이 대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2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미래산업국이었음. 다수의 부서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이 면담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표 9] 실·국별 면담 대상 사업수

실국명	평가 사업수	면담사업수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170	76	25	51
대변인	3	1	1	
민생기획관	1	1		1
감사관	1	1		1
시민소통담당관	2	1		1
청년정책담당관	5	1	1	
창의도시지원단	1			
기획조정실	4	1		1
재정기획관	1			
행정국	8	4		4
시민안전본부	2			
경제산업본부	9	3	1	2
미래산업국	22	11	9	2
환경국	7	2		2
교통국	1	1		1
문화체육국	39	17	3	14
보건복지국	1			
여성가족국	6	3		3
국제협력국	17	8	3	5
글로벌도시국	5	3	1	2
해양항공국	8	5	2	3
도시계획국	5	3	1	2
도시균형국	5	1		1
경제청 도시디자인단	1	1		1
경제청 기획조정본부	9	3	1	2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4	3	1	2
경제청 영종청라본부	1	1	1	
상수도사업본부	2	1		1

2) 성과평가 결과

□ 5개 등급 평가 결과

○ 5개 등급 기준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매우우수가 12건으로 7.1%, 우수가 22건으로 12.9%를 차지해 우수 이상이 34건에 20.0%. 보통은 114건에 67.1%를 차지했으며, 미흡은 18건으로 10.6%, 매우미흡은 4건에 2.4%로 미흡 이하 등급이 22건에 12.9%를 차지함.

○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의 비율 20.0%는 평가기준에서 규정한 20% 이내를 충족했으며,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은 12.9%로 평가기준에서 규정한 10% 이상을 충족했음.

[표 10] 2025회계연도 실국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부서명	사업수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소 계	170	12	22	114	18	4
대변인	3			3		
민생기획관	1					1
감사관	1		1			
시민소통담당관	2	1		1		
청년정책담당관	5	1	1	3		
창의도시지원단	1			1		
기획조정실	4			3	1	
재정기획관	1		1			
행정국	8	1		5	2	
시민안전본부	2			2		
경제산업본부	9		1	6	2	
미래산업국	22	3	3	15	1	
환경국	7	1	2	4		
교통국	1				1	

부서명	사업수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문화체육국	39		5	29	4	1
보건복지국	1			1		
여성가족국	6	2		3	1	
국제협력국	17	2	1	12	2	
글로벌도시국	5		3	2		
해양항공국	8		1	7		
도시계획국	5			4		1
도시균형국	5	1		4		
경제청 도시디자인단	1				1	
경제청 기획조정본부	9		3	5	1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4			1	2	1
경제청 영종청라본부	1			1		
상수도사업본부	2			2		
비율 결과	100%	7.1%	12.9%		10.6%	2.4%
			20.0%	67.1%		12.9%

□ 부서별 평가 결과

○ 부서별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미흡 등급이 부여된 실국은 민생기획관, 문화체육국, 도시계획국,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각각 1개 사업임.

○ 미흡 등급이 많이 부여된 실국은 문화체육국으로 4개의 사업이 해당되는데 평가 대상 사업 수 39개 가운데 10.3%를 차지함. 그 외 행정국, 경제산업본부, 국제협력국, 경제청 투자유치본부가 각각 2개의 사업이 미흡 등급을 부여받았음.

○ 우수 등급은 문화체육국이 5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경제청 기획조정본부가 각각 3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음.

○ 매우 우수 등급의 경우 미래산업국이 3개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가족국과 국제협력국이 각각 2개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음.

□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보다 평가 결과 전반 양호

○ 투자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의 비율은 31.7%인데 반해 행사성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13.6%로 투자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의 비율이 18.1%p 높음. 미흡 이하 등급의 비율 또한 투자사업이 8.4%로 행사성 사업의 15.4%보다 7.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통 등급은 투자사업이 60.0%에 그쳤는데, 행사성 사업이 70.9%로 행사성 사업이 10.9%p 높았음.

[표 11] 주요재정사업 중 투자사업 평가 결과

구분	합계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사업수	60	7	12	36	4	1
		19			5	
비율	100.0%	11.7%	20.0%	60.0%	6.7%	1.7%
		31.7%			8.4%	

[표 12] 주요재정사업 중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

구분	합계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사업수	110	5	10	78	14	3
		15			17	
비율	100.0%	4.5%	9.1%	70.9%	12.7%	2.7%
		13.6%			15.4%	

3) 주요재정사업 평가 분야별 점수 배점

□ 인천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점수 76.6점

○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점수는 76.6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보다 3.9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투자사업이 26.2점으로 25.5점을 받은 행사성 사업보다 0.7점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사업이 29.3점으로 28.4점을 받은 행사성 사업보다 0.9점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성과/환류 단계에서는 투자사업이 23.6점으로 21.3점을 받은 행사성 사업보다 2.3점 높은 점수를 받았음.

[표 13]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단계별 점수

	총점	사업계획	사업관리	성과/환류
합 계	76.6	25.8	28.7	22.1
투자사업	79.1	26.2	29.3	23.6
행사성사업	75.2	25.5	28.4	21.3

□ 백분위 환산으로 보는 단계별 점수

○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백분위로 환산할 경우 단계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170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평가분야별(사업계획(30점), 사업관리(35점), 성과/환류(35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득점/배점 * 100점' 임. 단계별 점수를 보면, 사업계획 단계가 85.9점, 사업관리 단계는 82.1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고, 성과/환류 단계는 63.2점으로 미흡 단계에 해당함.

○ 사업계획 단계에서 투자사업의 환산 점수는 87.4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행사성 사업의 환산 점수 또한 85.0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

○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사업이 83.6점, 행사성 사업이 81.2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

○ 성과/환류 단계에서는 투자사업이 67.4점, 행사성 사업이 60.9점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 특히 행사성 사업의 경우 매우 미흡 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표 14]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단계별 백분위 환산 점수

	총점	사업계획	사업관리	성과/환류
합 계	76.6	85.9	82.1	63.1
투자사업	79.1	87.4	83.6	67.4
행사성사업	75.2	85.0	81.2	60.9

□ 사업계획 단계 평점

○ 사업계획 단계는 30점 만점에 2개의 평가항목 아래에 6개의 지표가 있는데 투자사업이 26.2점으로 행사성 사업 25.5점 대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세부 지표

- 1-1. 사업의 추진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위계획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평가한 지표의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5점으로 우수했으며, 투자사업은 8.9점, 행사성 사업은 8.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2.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3점 만점에 2.8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투자사업이 2.8점, 행사성 사업이 2.9점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음

- 1-3. 사업 추진 일정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계획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는 2점 만점에 1.9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투자사업 1.8점 행사성 사업 2.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1-4. 사업 내용이 적정하고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었는가를 평가한 지표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투자사업이 4.3점, 행사성 사업이 4.6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평가 결과를 획득했으며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모두에서 사업계획 단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계획 목표의 적정성 평가항목 세부 지표

- 2-1. 사업(성과)계획이 사업 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지표는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 4.8점으로 양호한 평점을 받은 반면, 행사성 사업의 경우 4.1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2-2. 사업(성과)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한 지표는 5점 만점에 3.7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음.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모두 3.7점으로 사업(성과) 목표 설정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목표의 구체성, 합리성과 관련된 평가 점수가 낮게 이루어진 것은 현재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에 대한 설정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사업계획 단계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지표는 1-2 유사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와 1-3 사업 추진 일정 수립 관련 지표로 나타남

- 이에 반해 2-2 사업(성과)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한 지표는 백분위 환산 시 74.4점 수준으로 등급 기준 보통 수준에 머물렀음.

[표 15] 사업계획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사업계획 (30)	1-1 (10)	1-2 (3)	1-3 (2)	1-4 (5)	2-1 (5)	2-2 (5)
합 계	25.8	8.5	2.8	1.9	4.5	4.4	3.7
(백분위 환산)	85.9	84.6	94.1	95.3	90.1	87.1	74.4
투자사업	26.2	8.9	2.8	1.8	4.3	4.8	3.7
(백분위 환산)	87.4	89.3	91.7	88.3	85.3	96.7	73.7
행사성사업	25.5	8.2	2.9	2.0	4.6	4.1	3.7
(백분위 환산)	85.0	82.0	95.5	99.1	92.7	81.8	74.7

□ 사업관리 단계 평점

○ 사업관리 단계는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 아래에 3개의 지표가 있는데 투자사업이 29.3점으로 행사성 사업 28.4점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음.

○ 사업관리 적정성의 세부 평가지표

-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20점 만점에 18.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투자사업 18.4점, 행사성 사업 18.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3-2.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표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평이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투자사업 4.2점, 행사성 사업 3.8점으로 평가 점수 일부 차이를 보임.

-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낮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투자사업 6.7점, 행사성 사업 6.5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관리 단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는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를 평가한 지표임. 10점 평점에 6.7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65.4점이며, 이는 평가 등급 미흡에 해당함. 관련해 투자사업은 66.7점(6.7점), 행사성 사업 64.7점(6.5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부분은 문제 미발생 시 기본 점수를 부여받기에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측면이 존재할 수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 관리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 또한 제시해주고 있음.

○ 사업관리 단계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집행률 지표는(3-1) 백분위 환산 91.2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음.

[표 16] 사업관리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사업관리(35)	3-1(20)	3-2(5)	3-3(10)
합 계	28.7	18.2	3.9	6.5
(백분위 환산)	82.1	91.2	78.8	65.4
투자사업	29.3	18.4	4.2	6.7
(백분위 환산)	83.6	92.0	83.7	66.7
행사성사업	28.4	18.1	3.8	6.5
(백분위 환산)	81.2	90.7	76.2	64.7

□ 성과/환류 단계 평점

○ 성과/환류 단계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 세부 평가지표

- 성과/환류 단계에 대한 평가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투자사업 23.6점, 행사성 사업 21.3점으로 투자사업이 높게 평가 받았으나, 35점 만점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평가항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 결과임.

-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는 15점 만점에 11.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투자사업은 12.2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81.3점인 우수 수준이지만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10.4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69.3점으로 미흡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음.

- 4-2.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 평가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는 10점 만점에 6.0점인데, 투자사업은 6.4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64.0점으로 미흡 수준의 평가이고, 행사성 사업은 5.7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57.0점으로 매우 미흡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이는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 평가 실시 수준이 미흡함을 시사함.

- 4-3.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51.0점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투자사업은 5.0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50.0점으로 매우 미흡 수준이며 행사성 사업 또한 5.2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52.0점으로 매우 미흡 수준임. 이는 앞서 사업평가 실시 관련 지표의 평가 등급이 미흡한 것과 연계한 것으로 사업평가 실시 후 이를 차후 사업 구조개선에 환류하는 체계 작동이 미흡함을 시사함.

[표 17] 성과/환류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성과/환류(35)	4-1(15)	4-2(10)	4-3(10)
합 계	22.1	11.0	6.0	5.1
(백분위 환산)	63.1	73.3	60.0	51.2
투자사업	23.6	12.2	6.4	5.0
(백분위 환산)	67.4	81.3	64.0	50.0
행사성사업	21.3	10.4	5.7	5.2
(백분위 환산)	60.9	69.3	57.0	52.0

Ⅲ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1. 운용평가 개요
2. 운용평가 기준
3. 운용평가 결과

1. 운용평가 개요

1)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 정의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제2조)로 규정됨.

○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은 공공단체와 민간으로 구분되며 종류(예산과목)별 민간보조 8개 항목과 공공단체 보조 7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18] 지방보조금 종류별(예산과목별) 분류

민간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7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운수업계보조금(307-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8-09)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2025.1.1.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지방보조금법」상 운영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은 예산 편성부터 교부 신청·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부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내용·소요경비 등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 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조례 및 예산 목적과의 부합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절성, 금액 산정의 오류 여부, 자부담 이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8조).

○ 지방보조금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교부결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제13조). 이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제14조), 사업을 제3자에게 이관하거나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제15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음(제19조).

○ 아울러 해당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제17조), 동일 회계연도에 총 10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제18조).

○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목적 외 사용, 관련 법령이나 교부조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제12조). 이 밖에도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수급 제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5조), 강제징수(제36조)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책임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음.

□ 효율성과 투명성 강조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은 부정수급 모니터링 근거 신설, 재난·재해 발생 시 지방보조금 편성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운용평가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 및 집행 사실을 확인한 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약식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2025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규정에 준하여 공시 미이행 및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과 불응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 외에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자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공시 방법 등도 함께 정비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사업 탐지부터 지방자치단체 통보, 점검·현장조사 및 후속 제재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 이번 개정은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26년 변경 사항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하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 대한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의 이행 여부를 총액한도 운영과 연동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기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음. 이번 개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그리고 사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총액한도를 증액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 연도에 한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 다만,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사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액이 허용되지 않음. 반면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동결하도록 함.

○ 이번 변경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을 성과평가·유지필요성 검토·사후조치 이행과 연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지방보조금 규모의 확대 가능 여부를 평가 결과 및 사후관리 수준과 직접 연동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류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운용평가 근거

□ 법률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및 제2항).

○ 성과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며, 유지필요성 평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및 제2항).

[표 19]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조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상대평가 및 등급 비율 준수 의무화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28조에서 규정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대상 사업을 등급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평가 비율은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로 구성됨. 평가 등급 비율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다만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의 비율은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또한 매우 미흡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비율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율 할당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표 20] 「지방보조 관리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조항

(① ~ ② 생략)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 더불어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방보조금의 증액이 금지되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의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유지필요성 평가의 경우, 결과를 사업의 존치 여부와 직접 연계하여,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을 폐지 대상으로 관리함. 단, 미흡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존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지원 중단·폐지된 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역시 평가 결과의 실질적 환류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표 21]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 및 활용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율	10%	20%	55%	10%	5%
성과평가	-	-	-	증액 금지 /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재량)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
유지필요성 평가	-	-	-	사업 폐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존치 여부 결정	사업 폐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2025.1.1.

3) 운용평가 수행 체계

□ 평가 대상 및 자료수집

○ 운용평가는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 중 순수 군비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통계목 상의 평가 대상은 총 6개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임.

○ 운용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는 지방보조사업자 및 담당부서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함. 이외 관련 지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함.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서면평가를 진행함. 서면평가는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평가 점수를 득점 혹은 기준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평가자의 서면평가 이후 미흡 이하 등급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진행함. 객관적 상대평가를 위해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의 2~3배수의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면담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진행됨.

□ 평가 종합 및 이의제기

○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종합하여 1차 평가를 마무리함. 평가 결과는 산출근거와 함께 소관 부서에 송부했으며, 이후 서면을 통한 1회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 끝으로 이의제기 결과가 반영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함.

2. 지방보조사업 운영 현황

1) 2026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중 71%, 사업 목적 부합성 등 검토해야

○ 2026년 본예산 기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86,504백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1.38%를 차지함.

○ 편성액 대비 통계목별 비율을 확인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전체 세출예산액의 0.98%임. 뒤이어 사회복지사업보조(15.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8.5%) 순으로 편성액 비중이 큼.

○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체 편성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의 현 구조에서는 사업 목적의 적정성과 계속지원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유사·중복 사업 존재 여부, 반복적·관행적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특성상 용도 외 사용이나 집행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이에 실질적인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함.

[표 22] 인천광역시 2026회계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본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세출예산액 (A)	편성액 (B)	비중	비율(B/A)
계	13,484,246	186,504	100	1.38
민간경상사업보조		131,807	70.7	0.9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872	8.5	0.12
민간행사사업보조		1,181	0.6	0.01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5,819	3.1	0.04
사회복지사업보조		28,754	15.4	0.21
민간자본보조		3,071	1.6	0.02

출처: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개요(예산) - 통계목별 세출(총계, 당초) 재구성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공공단체보조 제외

□ 최근 5년 편성액 평균 증가율 6.88%, 세출예산액 증가율보다 높아

○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민간) 편성액 연평균 증가율은 6.88%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2022년 142,903백만 원이었으나, 2026년은 43,601백만 원이 증가한 186,504백만 원이 배정됨. 비율로는 약 31% 상승함.

○ 편성액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15.11%)이 가장 높고, 2024년(1.27%)이 가장 낮음. 가장 최근인 2026년은 4.57%로 나타나며 직전 연도인 2025년(7.07%)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액의 연평균 증가율(6.88%)이 같은 기간 세출예산액 연평균 증가율(4.44%)을 2.44%p 상회하고 있음, 이는 전체 세출예산 내 지방보조금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의미함.

○ 지방보조금 비중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경우 자체사업 추진 여력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 가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성과 및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보조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23]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 비율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A)	11,332,686	12,214,619	12,810,165	13,164,234	13,484,246	4.44
지방보조금(민간) 편성액(B)	142,903	164,492	166,587	178,361	186,504	6.88
비율(B/A)	1.26	1.35	1.30	1.35	1.38	-
편성액 전년 대비 증가율	-	15.11	1.27	7.07	4.57	-

출처: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개요(예산) - 통계목별 세출(총계, 당초) 재구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2) 타 지자체 비교

□ 광역 자치단체 17곳 중 편성 비율은 양호, 편성액은 다소 높은 편

○ 2026년 본예산 기준 17곳 광역 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편성액 규모 순위는 7위로 나타남. 이는 다소 높은 수준일 수 있으나, 세출예산액 대비 편성액 비중(1.38%)은 13위에 위치함.

○ 즉, 편성액의 절대 규모는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액 규모 대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적은 축에 속함. 4곳의 자치단체(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만이 인천광역시보다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편성 비중이 작음.

[표 24] 2026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특별/광역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세출예산액		편성액		비율(B/A)	
	금액(A)	순위	금액(B)	순위	비율	순위
서울본청	49,357,815	1	1,284,787	1	2.60	3
부산본청	17,009,727	3	191,490	5	1.13	14
대구본청	11,058,812	9	166,156	10	1.50	10
인천본청	13,484,246	6	186,504	7	1.38	13
광주본청	7,339,046	13	150,535	11	2.05	6
대전본청	6,718,996	15	110,111	17	1.64	9
울산본청	5,242,816	16	120,887	15	2.31	4
세종본청	1,962,743	17	148,406	12	7.56	2
경기본청	40,010,745	2	347,543	3	0.87	17
강원본청	8,373,061	11	176,599	8	2.11	5
충북본청	7,670,331	12	129,782	14	1.69	8
충남본청	11,723,060	7	117,170	16	1.00	15
전북본청	10,183,788	10	191,450	6	1.88	7
전남본청	11,694,178	8	174,567	9	1.49	11
경북본청	14,036,348	5	197,551	4	1.41	12
경남본청	14,285,083	4	141,821	13	0.99	16
제주본청	7,121,194	14	850,445	2	11.94	1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개요(예산) - 통계목별 세출(총계, 당초) 재구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유사자치단체(특·광역시) 8곳 중 보조금 편성 비율 하위권

○ 유사자치단체(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편성액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세출예산액과 편성액의 규모는 3위로 상위권에 위치하나, 세출예산액 대비 편성액 비중은 7위임.

○ 즉, 2026년 본예산 기준,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세출예산액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중은 유사자치단체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2026회계연도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세출예산액		편성액		비율(B/A)	
	금액(A)	순위	금액(B)	순위	비율	순위
서울본청	49,357,815	1	1,284,787	1	2.60	2
부산본청	17,009,727	2	191,490	2	1.13	8
대구본청	11,058,812	4	166,156	4	1.50	6
인천본청	13,484,246	3	186,504	3	1.38	7
광주본청	7,339,046	5	150,535	5	2.05	4
대전본청	6,718,996	6	110,111	8	1.64	5
울산본청	5,242,816	7	120,887	7	2.31	3
세종본청	1,962,743	8	148,406	6	7.56	1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개요(예산) - 통계목별 세출(총계, 당초) 재구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2026년, 전년 대비 편성액 증감률 특·광역시 중 중하위권

○ 2026년 본예산 기준, 인천광역시의 유사자치단체(특·광역시)의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 편성액 증감률(이하 증감률)은 4.57%로 유사자치단체 8곳 중 5위에 해당함. 인천광역시보다 증감률이 낮은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1.98%), 서울특별시(-1.56%), 광주광역시(-6.22%)로 단 3곳에 불과함. 이외 상위 4개 단체의 증감률은 모두 10%를 상회함.

○ 단년도 증감률만 놓고 보면 인천광역시의 증가 폭은 유사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이를 바탕으로 관리 적정성의 적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앞선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편성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즉, 특정 지표의 순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현재의 편성 규모 및 증가 추세의 적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만큼, 절대적 규모와 장기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표 26]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액 증감률 현황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편성액		증감률	
	2025년	2026년	비율	순위
서울본청	1,305,163	1,284,787	-1.56	7
부산본청	187,771	191,490	1.98	6
대구본청	142,082	166,156	16.94	1
인천본청	178,361	186,504	4.57	5
광주본청	160,526	150,535	-6.22	8
대전본청	94,316	110,111	16.75	2
울산본청	107,414	120,887	12.54	3
세종본청	133,465	148,406	11.19	4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개요(예산) - 통계목별 세출(총계, 당초) 재구성

3) 지방보조금의 교부세 등 영향 검토

□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 전환, 단발성 아니도록 유지·관리해야

○ '지방보조금 절감'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항목으로 반영되며, 중위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인센티브·페널티 여부가 결정됨.

○ 인천광역시는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으로부터 2022년과 2023년 각 28억 인센티브를 수령한 바 있으나, 2024년 -247억 원, 2025년 -77억 원으로 2년 연속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합계가 음의 결과(2024년 -313억 원, 2025년 -118억 원)를 기록하는 데에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 중 하나임.

○ 2026년에는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이 248억 원의 인센티브로 전환되며 자체노력도 합계(360억 원) 개선을 견인함.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부재할 경우, 언제든 다시 페널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2026년의 인센티브 전환이 단발성 결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 목적 부합성과 성과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혜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방식 등의 접근이 필요함. 또한 중위단체 대비 지방보조금 규모의 상대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표 2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단위: 억 원)

반영항목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6	100	-313	-118	360
인건비 건전운영	11	6	6	-96	-
지방의회경비 절감	9	12	9	4	4
업무추진비 절감	24	40	20	20	2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3	-11	-27	117	169
지방보조금 절감	28	130	-247	-77	248
예산집행 노력	-99	-77	-73	-84	-85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1	-

출처: 인천광역시 2022~26년 연도별 재정공시(예산), (+) 인센티브, (−) 페널티

주: 2026년부터 단위를 억 원으로 공시함에 따라, 이전 연도의 단위를 이에 맞춰 조정함.

□ 지방보조금 증감률 급감, 재정분석에 긍정적 영향

○ 지방보조금비율과 지방보조금증감률은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배포하며, 결산 기준 가장 최신 자료는 2026년 2월 발간된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의 지표임.

○ 결산 기준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유형 및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지방보조금 증감률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유형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보조금 지표는 비율과 증감률을 동시에 반영함. 반영 비중은 비율 4대 증감률 6으로, 증감률이 비율에 비해 높음. 따라서 증감률이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3년까지, 이는 인천광역시에 불리한 지표였음.

○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4년, 지방보조금 증감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7.77%→0.91%) 지방보조금 지표는 오히려 인천광역시에 유리하게 작용함. 이는 유형 및 전국평균(9.51%, 5.06%)과 비교하여도 양호한 수준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 및 보조금 교부 기준 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지방재정분석 평가비중 내 지방보조금 비율(증감률)의 가중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2022년 4%→6%, 2023년 6%→7%) 인천광역시 역시 지속적인 계획·관리가 요구됨.

[표 28] 지방재정분석의 지방보조금 지표 현황

(단위: %)

구분		당해연도	유형평균	전국평균
FY2024	지방보조금 비율	1.31	2.18	5.98
	(지방보조금 증감률)	0.91	9.51	5.06
FY2023	지방보조금 비율	1.35	2.03	5.89
	(지방보조금 증감률)	7.77	-3.38	5.35
FY2022	지방보조금 비율	1.27	2.03	5.51
	(지방보조금 증감률)	19.05	11.23	10.38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3. 운용평가 기준

1) 행정안전부 운용평가 기준 분석

□ 2025년「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성과평가 지표 분석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지표는 단년도 단위의 성과평가와 3년 주기의 유지필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해당 기준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4년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며,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는 평가 분야 및 항목 구성은 동일하되 항목별 배점에 차이를 두어 평가 목적에 따른 변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평가 분야는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40점), 사업성과(40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배점 체계는 전년도인 2024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됨.

○ 2025년 기준에서는 사업계획, 부정수급 방지, 성과달성, 계속지원 필요성 항목에 세부 판단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평가자가 적용해야 할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항목에서는 목표 달성의 적정성, 단계별 지출계획의 구체성, 수행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요소로 명시됨. 사업관리 항목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여부, 수행상황 점검 실시 여부, 정산보고서 및 회계서류 검사 여부까지 확인 범위가 세분화되었음. 사업성과 항목에서도 단순한 성과 달성 여부에 그치지 않고, 계획 대비 일정 준수, 목표 달성 효과,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주민 관심 및 지지, 수혜범위의 구체성 등이 판단요소로 추가됨.

○ 아울러 “매우 미흡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비율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하위등급 배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하위등급 분류 기준이 구체화 됨. 유지필요성 평가로 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요건 역시 전년 대비 보다 정밀하게 정비됨.

○ 이와 같이 2025년 개정 기준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부정수급 통제, 성과의 구체성, 계속지원의 타당성 등을 보

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20)	1-1. 보조사업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여부?	5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 수립된 사업계획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가?	
	- 사업비 지출계획이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4.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5
사업관리 (40)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10
	- 보조금 집행단계별로 적정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가?	
	- 수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정산보고서 및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검증)를 실시하였는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사업성과 (4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0
	- 계획한 사업 내용이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 사업 수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가?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미흡과 매우미흡 비율은 상향 가능. 매우미흡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미흡 비율과 매우미흡 비율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미흡 비율 및 매우미흡 비율 할당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유지필요성 평가 시기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2025.1.1.

□ 2025년「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분석

○ 유지필요성 평가는 당초 성과평가 지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나, 2024년 개정을 통해 별도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음. 평가 분야는 성과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로 구성되며, 분야별 배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 2025년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25점, 사업관리 25점, 사업성과 50점의 배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평가 구조상 큰 변화는 없음. 다만 성과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항목의 세부 판단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임.

○ 성과평가와 배점을 비교하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는 사업관리 배점이 15점 축소(40점→25점)된 반면, 사업계획은 5점(20점→25점), 사업성과는 10점(40점→50점) 각각 상향됨.

○ 이는 유지필요성 평가가 사업의 지속 여부 판단과 성과 실현 정도에 보다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데 따른 결과임. 특히 사업성과 분야에서는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항목에 30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항목에 20점이 배분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존치 타당성을 핵심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24년 기준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폐지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미흡 등급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바 있음. 이에 비해 2025년 개정 기준은 '미흡 등급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별 사후조치 기준을 한층 분명히 하였음.

[표 30]「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표7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25)	1-1. 보조사업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여부?	5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 수립된 사업계획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가?	
	- 사업비 지출계획이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4.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0
	※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 보조금 집행단계별로 적정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가?	
	- 수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정산보고서 및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검증)를 실시하였는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사업성과 (5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
	- 계획한 사업 내용이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 사업 수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가?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미흡과 매우미흡 비율은 상향 가능. 매우미흡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미흡 비율과 매우미흡 비율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미흡 비율 및 매우미흡 비율 할당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미흡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여야 함(미흡 등급인 경우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2025.1.1.

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설계

□ 개요

○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위해 설계한 평가지표는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세 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향상하도록 함. 이외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 계속 지원 필요성 등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평가지표는 202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이하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함. 큰 축으로는 단년도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

□ 성과평가 지표 설계

○ 성과평가는 관리기준의 분야 구분과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함(사업계획 20점・사업관리 40점・사업성과 40점).

○ 사업계획은 보조사업의 명시적 근거와 유사・ 중복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 예산 편성의 계획성 항목에 가장 큰 배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고자 함. 한편, 지방보조사업은 통계목의 특성에 따른 사업 간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 항목을 설계함.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대상으로는 성과목표의 명확성을,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으로는 자부담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구분함.

○ 사업관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둠. 특히 실적・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증빙서류의 완결성, 보조금 부정 사용 여부에 가장 큰 배점을 두어 개정된 관리기준에서 강조한 수행상황 점검,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사업관리 분야 역시 통계목에 따라 상이한 평가 항목을 제시함. 주요한 차이점은 보조금 집행의적합성(민간경상사업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보조),소모성 비용 지출 규

모의 적정성(민간행사사성보조),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임.

○ 사업성과는 관리 기준에서 제시한 당초 계획한 성과 달성 여부・계속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최종 수혜자 만족도까지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용성과 당위성을 판단하고자 함.

○ 이외 서류 기한 내 제출 여부, 예비비 편성 여부를 감점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예산 효율성을 점검함. 또한 정보공시 완료 여부를 감점 지표로 설계하여 관리기준 개정 사항(2025년부로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가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설계

○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기준의 분야 구분과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함(사업계획 25점・사업관리 25점・사업성과 50점).

○ 사업계획은 성과평가의 것과 유사하게 제시되나, 증가한 배점(성과평가 20점→유지필요성 평가 25점)을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의 구체・적절성에 배치함. 이를 통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강조하는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을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성과평가 사업계획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계목별 사업 운영 특성을 반영해 일부 평가 항목을 구분함.

○ 사업관리는 성과평가 대비 15점 감소한 25점을 배정함. 단,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제출의 완결성, 보조금의 부정 사용 여부에 가장 큰 배점을 두어 주요 평가 항목의 실효성을 확보함. 이외 보조금 규모와 관련한 평가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

○ 사업성과는 계획한 사업 성과 달성 여부, 계속 지원 필요성 검토를 각 15점으로 배정하여 사업의 존속 타당성을 엄중하게 평가하도록 함. 이외 최근 2년간의 평가 점수를 20점으로 두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사업의 존치 필요성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고자 함.

○ 성과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서류 기한 내 제출・예비비 편성・정보공시 완료 여부를 감점 지표로 설정함.

[표 31] 인천광역시 성과평가 지표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00
사업 계획 (20)	1-1.	보조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가?	3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가?	3
	1-4.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계획적인가?	6
	1-5.	<민간법정운영·사회복지법정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5
		<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보조> 자부담 비중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5
사업 관리 (40)	2-1.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6
	2-2.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6
	2-3.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은 완결성이 있는가?	8
	2-4.	보조금을 부적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8
	<경상사업보조·자본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2-5.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	6
	2-6.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6
	<행사사업보조>		
	2-5.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	6
	2-6.	소모성 비용 지출이 과도하지 않은가?	6
	<법정운영비보조>		
	2-5.	인건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정운영비를 집행하는가?	6
	2-6.	법령에 맞게 교부금을 집행하였는가?	6
사업 성과 (40)	3-1.	계획한 사업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15
	3-2.	최종 수혜자가 만족하였는가?	10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감점	4-1.	완료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5
	4-2.	예비비를 편성하였는가?	-2
	4-3.	정보공시를 완료하였는가?	-2

[표 32] 인천광역시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00
사업 계획 (25)	1-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3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6
	1-4.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가?	6
	1-5.	<민간법정운영·사회복지법정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5
		<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보조> 자부담 비중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5
사업 관리 (25)	2-1.	사업 내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3
	2-2.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3
	2-3.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은 완결성이 있는가?	8
	2-4.	보조금을 부적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8
	2-5.	보조금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사업 성과 (50)	3-1.	최근 2년 평가 점수 종합(최근 2년 평가 점수합*0.2)	20
	3-2.	계획한 사업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15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감점	4-1.	완료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5
	4-2.	예비비를 편성하였는가?	-2
	4-3.	정보공시를 완료하였는가?	-2

4. 운용평가 결과

1) 운용평가 대상 사업 현황

□ 2025회계연도 수행 지방보조사업 총 340건

○ 2025회계연도에 수행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은 총 340건으로, 성과평가 329건(96.8%) 및 유지필요성평가 11건(3.2%)으로 구성됨.

○ 성과평가 사업수는 329건으로 총사업비는 452,680,322천원 중 431,490,706천원이 교부되었고 이중 자부담은 22,749,876천원임. 자부담률 5.0%.

○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사업수는 11건임. 총사업비는 3,098,091천원이며 이중 교부액은 2,441,431천원이고 자부담액은 656,660천원으로 자부담률 21.2%임.

○ 전체 사업의 대부분(329건, 예산의 약 99.3%)이 성과평가 대상이며,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는 작으나 자부담률(21.2%)이 성과평가(5.0%)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지필요성 평가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억5천만원 중 보조금이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 6억3천만원이 자부담(84%)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부담률이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 높음.

○ 이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총 사업비 1억1,120만원의 자부담 10%(1,120만원), ‘호스피스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총 사업비 6천만원의 자부담 17%(1천만원), ‘인천광역시 전국베이스볼5 대회’ 총 사업비 2,860만원의 자부담 13%(362만원), ‘전기종사자 전기안전교육 1,812만원의 자부담 10%(184만원) 등 10% 이상의 자부담을 편성함.

[표 33]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사업수	예산액	교부액	자부담	자부담률
성과평가	329	452,680,322	431,490,706	22,749,876	5.0
유지필요성평가	11	3,098,091	2,441,431	656,660	21.2

□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평가(329건)와 유지필요성평가(11건) 모두에서 '보통' 등급이 절반 이상(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성과평가의 경우 총 329건 중 '보통'이 178건(54.1%)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우수' 66건(20.1%), '매우우수' 34건(10.3%), '미흡' 34건(10.3%), '매우미흡' 17건(5.2%) 순으로 나타남.

○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사업 총 11건 중에서는 '보통'이 6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 2건(18.2%), '매우우수'·'미흡'·'매우미흡'이 각각 1건(9.1%)으로 평가됨.

○ 평가 등급별 경향을 보면, 우수 이상(매우우수+우수) 사업 비중은 성과평가 30.4%(100건), 유지필요성평가 27.3%(3건)로 성과평가 부문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미흡 이하(미흡+매우미흡) 사업 비중은 성과평가가 15.5%(51건), 유지필요성평가가 18.2%(2건)로 집계되어 향후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산 조정 등 사후 관리 필요.

○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상대평가 기준을 준수함.

[표 34]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과평가(건)	34	66	178	34	17
비율	10.3%	20.1%	54.1%	10.3%	5.2%
유지필요성(건)	1	2	6	1	1
비율	9.1%	18.2%	54.5%	9.1%	9.1%

□ 부서별 평가결과 및 등급

○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총 340건(성과평가 329건, 유지필요성평가 11건 중복 포함) 중 부서별 사업 규모는 체육진흥과(47건), 장애인복지과(27건), 자치행정과(27건), 노인정책과(25건), 보훈정책과(23건) 순으로 다수 사업을 수행함.

○ (성과평가 부서별 결과) 성과평가 대상 329건의 평가 결과는 '보통'이 178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수' 66건(20.1%), '매우우수' 34건(10.3%), '미흡' 34건(10.3%), '매우미흡' 17건(5.2%)으로 나타남.

○ (우수 이상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은 총 12건(매우우수 1, 우수 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정책과'(매우우수 5, 우수 4 등 총 9건), '장애인복지과'(매우우수 2, 우수 7 등 총 9건), '자치행정과'(매우우수 1, 우수 5 등 총 6건), '아동정책과'(매우우수 4, 우수 2 등 총 6건)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임.

○ (미흡 이하 부서) '장애인복지과'(미흡 5건), '문화유산과'(미흡 4건), '자치행정과'(미흡 3, 매우미흡 1 등 총 4건), '보훈정책과'(미흡 4, 매우미흡 1 등 총 5건), '체육진흥과'(미흡 3, 매우미흡 2 등 총 5건), '노동정책과'(미흡 2, 매우미흡 2 등 총 4건), '택시운수과'(미흡 1, 매우미흡 2 등 총 3건) 등에서 미흡 이하 사업이 다수 발생함.

○ (유지필요성평가 부서별 결과) 총 8개 부서, 11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보통' 6건(54.5%), '우수' 2건(18.2%), '매우우수'·'미흡'·'매우미흡' 각 1건(9.1%)으로 집계됨.

○ 사업수가 가장 많은 '체육진흥과'(4건)는 '우수' 2건, '보통' 2건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음.

○ 반면, '녹지정책과'(매우미흡 1건) 및 '문화정책과'(미흡 1건)는 미흡 이하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이 있어 사업 존속 여부 및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에너지산업과'는 1건 중 '매우우수' 1건을 획득함.

[표 35]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평가 결과

(단위: 건)

구분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명	총사업수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340	329	34	66	178	34	17	11	1	2	6	1	1
비율	-	100%	10.3%	20.1%	54.1%	10.3%	5.2%	100%	9.1%	18.2%	54.5%	9.1%	9.1%
경제정책과	3	3	1	0	2	0	0						
소상공인정책과	10	10	1	1	5	2	1						
사회적경제과	4	4	0	2	2	0	0						
노동정책과	16	16	1	2	9	2	2						
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문화과	1	1	0	1	0	0	0						
경제자유구역청 산성장산업유치과	1	1	0	1	0	0	0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1	1	1	0	0	0	0						
버스정책과	1	1	0	0	0	1	0						
택시운수과	3	3	0	0	0	1	2						
국제협력과	1	1	1	0	0	0	0						
재외동포협력과	1	1	1	0	0	0	0						
다문화사회과	2	2	0	0	0	1	1						
관광마이스과	2	2	0	0	1	1	0						
투자유치과	1	1	0	0	1	0	0						
정책기획관	4	4	1	1	2	0	0						
교육협력담당관	2	2	0	2	0	0	0						
농축산과	9	8	0	0	7	0	1	1			1		

(단위: 건)

구분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명	총사업수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식품산업과(전 농축산과)	2	2	0	1	1	0	0						
식품산업과(전 수산과)	1	1	0	0	1	0	0						
농업기술센터	11	11	0	2	7	2	0						
건축과	1	1	0	0	0	0	1						
인천대로개발과	1	1	0	0	1	0	0						
녹지정책과	2	1	0	1	0	0	0	1					1
산업정책과	13	13	5	4	3	0	1						
에너지산업과	2	1	0	0	1	0	0	1	1				
안전예방과	2	2	0	1	1	0	0						
섬해양정책과	2	2	1	1	0	0	0						
물류정책과	1	1	0	0	1	0	0						
해양환경과	3	3	0	0	2	0	1						
수산기술지원센터	2	2	1	0	1	0	0						
환경기후정책과	2	2	0	1	1	0	0						
자원순환과	3	3	0	0	3	0	0						
환경안전과	2	2	0	2	0	0	0						
대기보전과	2	2	2	0	0	0	0						
수질하천과	3	3	0	1	0	2	0						
인구전략기획과	4	4	1	0	3	0	0						
여성정책과	7	7	2	2	3	0	0						

(단위: 건)

구분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명	총사업수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대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노인정책과	25	25	0	3	21	1	0						
아동정책과	8	8	4	2	2	0	0						
청소년정책과	1	1	1	0	0	0	0						
아동복지관	1	1	1	0	0	0	0						
문화정책과	10	9	1	2	5	0	1	1				1	
예술정책과	7	7	0	2	3	0	2						
문화유산과	13	13	1	3	5	4	0						
체육진흥과	47	43	1	11	26	3	2	4		2	2		
총무과	1	1	0	0	0	1	0						
자치행정과	27	27	1	5	17	3	1						
보훈정책과	23	23	0	3	15	4	1						
복지정책과	12	12	1	0	10	1	0						
보건의료정책과	3	3	1	0	2	0	0						
장애인복지과	27	27	2	7	13	5	0						
감염병관리과	3	3	1	1	1	0	0						
위생정책과	1	1	0	1	0	0	0						
건강증진과	1							1			1		
청년정책담당관	1							1			1		
자연재난과	1							1			1		

2) 성과평가 결과

□ 사업계획 분야

○ 성과평가 대상 329개 사업의 '사업계획 분야'(20점 만점) 평균 점수는 15.25점(득점률 76.2%)으로 나타남. 법령・조례 지원근거(95.4%) 및 유사・중복 여부(91.1%)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 관련 지표는 90% 이상의 매우 높은 득점률을 기록함.

○ 반면, 예산편성 계획성(74.0%)과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58.2%) 지표의 득점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사전 계획 수립 단계의 구체성 및 자부담 확보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1-1. 법령・조례 지원근거 (배점 3점 / 평균 2.86점, 득점률 95.4%)

- 대다수 사업이 상위 법령(지방자치법, 개별 진흥법 등) 및 시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적절히 확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상 명시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단순 단체 지원 관행에 따라 추진되어 구체적인 지원 조례 조항 명시 및 근거 보완이 요구됨.

○ 1-2. 유사・중복 여부 (배점 3점 / 평균 2.73점, 득점률 91.1%)

- 기존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및 시 자체 고유사무와의 기능적 중복을 피하고 민간 보조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설계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함.

- 그러나 일부 체육대회, 1회성 축제・행사, 연찬회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에서 타 부서 사업 또는 동일 단체의 타 행사와 사업 내용・수혜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사례가 지적됨.

○ 1-3. 사업계획 구체성 (배점 3점 / 평균 2.34점, 78.1%)

- 사업 추진 일정, 프로그램 구성, 추진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된 사업이 다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이거나 개략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음.

- 특히 세부 프로그램별 일정 미비, 참여 대상 및 규모의 사전 수요조사 누락, 부서 계획과 보조사업자 계획서 간 불일치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함.

○ 1-4. 예산편성 계획성 (배점 6점 / 평균 4.44점, 득점률 74.0%)

- 산출내역 작성 시 단가·수량·횟수 등 명확한 산출 기초 없이 '총액(식)'으로 일괄 계상하거나, 행사운영비·일반운영비 등 특정 비목에 편중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포상금, 의전비, 국외여비, 인건비 등에 대한 객관적 지급 기준 및 구체적 집행계획 제시가 미흡한 사업들이 다수 감점됨.

○ 1-5.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 (배점 5점 / 평균 2.91점, 득점률 58.2%)

- 사업계획 분야 중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수 사업이 검증 가능한 '정량적 성과목표'(참여 인원, 만족도, 달성률 등) 대신 정성적·추상적 목표만을 제시하여 사전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함.

- 또한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총사업비 전액을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자부담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자부담률 0%), 자부담 확보 비율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어 민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매칭 비율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함.

[표 36] 성과평가 | 사업계획 분야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1-1	법령·조례 지원근거	3	2.86	95.4%
1-2	유사·중복 여부	3	2.73	91.1%
1-3	사업계획 구체성	3	2.34	78.1%
1-4	예산편성 계획성	6	4.44	74.0%
1-5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	5	2.91	58.2%

□ 사업관리 분야

○ 사업관리 분야는 총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예산집행(84.0%) 및 보조금 적정 사용(83.4%) 지표는 80%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으나, 일반시민(수혜대상)(57.6%)과 증빙서류 완결성(66.5%)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남.

○ 계획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2-1, 2-2, 2-4, 2-6)

- 계획대로 예산·사업을 집행(2-2: 평균 5.04점 / 84.0%, 2-1: 평균 4.71점 / 78.5%)함.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과 일정에 맞추어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및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사례가 확인됨.

- 보조금 적정 사용 및 용도 적정 집행(2-4: 평균 6.67점 / 83.4%, 2-6: 평균 4.61점 / 76.9%)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집행되었으나,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단순 계좌 송금 방식 집행, 특정 인건비·운영비 과다 지출 및 지자체 미승인 비목 변경 사례 등이 일부 지적됨.

○ 증빙서류 완결성(2-3)

- 증빙서류 완결성(평균 5.32점 / 득점률 66.5%) 항목은 정산검토 보고서 상 세부 지출결의서, 카드 영수증, 행사 사진, 참석자 명부 등 집행 사실을 입증할 회계·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총액 위주로 간략히 제출되어 정산 검증에 한계가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 점수가 낮게 책정됨.

○ 일반시민 수혜대상 적정성(2-5)

- 일반시민(수혜대상)(평균 3.46점 / 득점률 57.6%) 항목은 사업관리 분야 중 가장 취약한 지표로 평가됨.

- 주요 미흡 요인은 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특정 단체 회원·내부 관계자 위주의 폐쇄적 행사나 회원 한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보조금의 공익적 수혜 범위가 협소함. 이는 사업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37] 지방보조사업 사업관리 분야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2-1	계획대로 사업집행	6	4.71	78.5%
2-2	계획대로 예산집행	6	5.04	84.0%
2-3	증빙서류 완결성	8	5.32	66.5%
2-4	보조금 적정 사용	8	6.67	83.4%
2-5	일반시민(수혜대상)	6	3.46	57.6%
2-6	용도 적정 집행	6	4.61	76.9%

□ 사업성과 분야

○ 사업성과 분야는 성과 달성도(80.8%) 및 계속지원 필요성(78.1%)은 약 80% 수준의 양호한 득점률을 보였으나, 수혜자 만족도(69.8%) 지표는 60%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성과 달성도(3-1)

- 성과 달성도(평균 12.13점 / 배점 15점, 득점률 80.8%)는 교육 횟수, 행사 참가자 수 등 정량적 추진 실적은 대부분 당초 목표치에 부합하게 달성함.

- 하지만 다수 사업이 성과 목표를 단순 참여 인원 집계 위주로 평가하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효과(예: 수혜자 역량 향상,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측정 결과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수혜자 만족도(3-2)

- 수혜자 만족도(평균 6.98점 / 배점 10점, 득점률 69.8%) 항목은 사업성과 분야 중 가장 취약한 지표로 분석됨.

- 주요하게는 상당수 사업에서 참여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만족도 설문조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거나 결과 데이터가 누락되었으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자체적·형식적 조사에 그쳐, 조사 결과를 차기 사업 계획 개선 및 정책 환류로 연계하는 환류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계속지원 필요성(3-3)

- 계속지원 필요성(평균 11.71점 / 배점 15점, 득점률 78.1%) 항목은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 공익 증진, 지속적인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됨.

- 매년 반복되는 연례 답습형 행사 및 단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업 내용 재정비 및 자부담 비율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지방보조사업 사업성과 분야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3-1	성과 달성도	15	12.13	80.8%
3-2	수혜자 만족도	10	6.98	69.8%
3-3	계속지원 필요성	15	11.71	78.1%

□ 감점

○ 감점 항목은 사업 수행의 기본적 행정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당 평균 -1.38점의 감점이 발생함. 주요 감점 요인은 ‘정보공시 완료(4-3)’ 88건(26.9%)과 ‘완료서류 기한 내 제출(4-1)’ 77건(23.5%)이 대다수를 차지함.

○ 정보공시 완료(4-3, 배점 -2점)

- 전체 329건 사업 중 총 88건에서 감점이 발생(발생률 26.9%)함.

- 전체 평가 대상의 4건 중 1건 이상에서 보조사업 관련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하여 감점(-1~ -2점)이 부여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 관리·점검 강화 필요.

○ 완료서류 기한 내 제출 (4-1, 배점 -5점)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총 77건 사업에서 발생(발생률 23.5%)함.

- 사업 종료 후 정산서 및 완료 실적보고서를 법정·행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 제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지연 일수에 따라 -1~ -5점 감점 적용).
- 보조사업자의 정산 일정 준수를 유도하고 담당 부서의 엄격한 기한 관리가 필요.

○ 예비비 편성 (4-2, 배점 -2점)

- 전체 성과평가 사업 중 총 4건 발생(발생률 1.2%)해 가장 낮은 감점 사유임.
- 하지만 보조금 예산 편성 시 편성 불가 비목인 '예비비'를 계상한 사례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업 건수는 미미하나 사전 예산안 심사 및 교부 결정 단계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됨.

[표 39] 지방보조사업 감점 항목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발생건수	발생률
4-1	완료서류 기한 내 제출	-5	77	23.5%
4-2	예비비 편성	-2	4	1.2%
4-3	정보공시 완료	-2	88	26.9%

3) 유지필요성 평가

□ 사업계획 분야

○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11건의 사업계획 분야는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조례 지원근거(100.0%) 지표는 전 사업 만점을 기록한 반면,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70.9%) 및 예산편성 효율・계획성(75.8%)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법령・조례 근거(1-1)

- 법령・조례 지원근거(평균 3.00점 / 100.0%)는 평가 대상 사업 11건 모두 관련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되어 지원 타당성을 확보함.

○ 유사・중복 여부(1-2)

- 유사・중복 여부(평균 4.36점 / 배점 5점, 득점률 87.3%)는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성은 대체로 낮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등 지자체 자체 계획 범위가 제한적인 일부 사업이 존재함.

○ 사업계획 구체・적절성(1-3)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평균 5.00점 / 배점 6점, 득점률 83.3%) 항목은 직무 교육 커리큘럼, 일정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적인 계획 완성도는 양호하나, 일부 사업에서 전년도 추진실적 누락, 연도 표기 오류(2026년 계획서 오제출), 서명 누락 등 관리상 미비점이 확인됨.

○ 예산편성 효율・계획성(1-4)

- 예산편성 효율성과 계획성(평균 4.55점 / 배점 6점, 득점률 75.8%) 항목에서 점검한 세부 산출내역은 대체로 구체적이나 단기 행사의 과다한 운영수당 책정, 매년 반복되는 단복비・포상금 산출 근거 미흡,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메달이나 소모품 구입 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공익적 보조사업 목적보다 단체 내부 역량 강화나 전국대회 참가 위주의 예산(국내여비, 임차료 등) 편성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요구.

○ 성과목표 및 자부담 적정성(1-5)

-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평균 3.55점 / 배점 5점, 득점률 70.9%) 항목은 사업계획 분야 중 가장 취약한 지표로 평가됨.

-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자부담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천 청년도약기지',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등 일부 사업이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만 충당되어 재정 부담 분산 및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

-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등 전년 대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하락(17%→10%)한 사례가 발생해 보조금 감액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임지도자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목표가 수립되지 않아 성과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노출됨.

[표 40]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1-1	법령·조례 지원근거	3	3.00	100.0%
1-2	유사·중복 여부	5	4.36	87.3%
1-3	사업계획 구체·적절성	6	5.00	83.3%
1-4	예산편성 효율·계획성	6	4.55	75.8%
1-5	성과목표·자부담 적정성	5	3.55	70.9%

□ 사업관리 분야

○ 유지필요성평가 대상(11건)의 사업관리 분야는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규모 안정성(87.9%) 및 사업집행(78.8%)·보조금 적정 사용(77.3%)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증빙서류 완결성(61.4%) 지표는 60%대 초반에 머물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적인 사업 추진(2-1)

-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했는지(평균 2.36점 / 배점 3점, 득점률 78.8%)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 목적에 맞추어 정상 추진됨.

- 다만 실적보고서 상의 세부 추진실적 기술이 간략하거나 형식적 자체평가에 그친 사례가 존재함.

○ 계획적인 예산집행(2-2)

-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평균 2.27점 / 배점 3점, 득점률 75.8%)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집행률이 90% 이상(94~99%)으로 전반적인 양호함.

- 일부 불용액 및 소규모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유 관리와 정산의 정확성이 요구됨.

○ 증빙서류 완결성(2-3)

- 증빙서류 완결성(평균 4.91점 / 배점 8점, 득점률 61.4%) 측면에서는 사업관리 분야 중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함.

- 평가를 위한 지출 증빙자료가 부재하거나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행사 사진 등 핵심 정산 증빙 자료가 미첨부되거나 증빙자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 적절성 검토가 불가능한 사업(‘인천형 아트페어’, ‘인천 청년도약기지’,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등)이 다수 확인됨.

- 이는 보탬e 시스템 전면 도입 결과, 사업 담당자의 자료 취합 과정이 소모적이고 길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추후 외부 평가를 지속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됨.

- 또한 의전·다과비 등 세부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등 제출한 정산 자료에서는 지출 내역의 구체성 및 투명성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보조금 적정 사용(2-4)

- 보조금 적정 사용(평균 6.18점 / 배점 8점, 득점률 77.3%) 항목은 전용카드 사용 및 정기점검을 내실 있게 이행한 사업(‘전기안전교육’ 등)이 있는 반면, 집행 부적정 사례도 여전히 상존함.

- 부적정한 지출 사례는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단순 계좌송금 처리, 지자체 사전 승인 없는 인건비 임의 증액·무단 변경 지출, 보조금 집행 부적합 항목 지출(꽃다발·사은품 쇼핑백 구매, 과도한 단가의 내빈 도시락 및 의전차량 비용 지출 등)이 지적됨.

○ 보조금 규모 안정성(2-5)

- 보조금 규모 안정성(평균 2.64점 / 배점 3점, 득점률 87.9%) 측면에서는 전년도 지원 규모 대비 과도한 예산 증액 없이 안정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사업(‘천원의 아침밥’, ‘청년도약기지’)의 경우 전년 대비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감점 요인으로 작용함.

[표 41]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사업관리 분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2-1	계획대로 사업집행	3	2.36	78.8%
2-2	계획대로 예산집행	3	2.27	75.8%
2-3	증빙서류 완결성	8	4.91	61.4%
2-4	보조금 적정 사용	8	6.18	77.3%
2-5	보조금 규모 안정성	3	2.64	87.9%

□ 사업성과 분야

○ 유지필요성 평가 중 마지막인 사업성과 분야는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년 평가점수 종합(76.4%) 및 성과 달성도(75.8%)는 70%대 중반의 득점률을 보인 반면, 계속지원 필요성(70.3%) 지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최근 2년 평가점수 종합(3-1)

- 최근 2년 평가점수를 종합(평균 15.27점 / 배점 20점, 득점률 76.4%)한 결과는 과거 2개년 동안의 지속적인 사업 수행 실적과 누적된 성과를 평가한 항목으로, 전반적으로 70%대 중반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음.

○ 성과 달성도(3-2)

- 성과 달성도(평균 11.36점 / 배점 15점, 득점률 75.8%)를 평가한 결과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각종 대회 메달 획득 실적 상승), '청년도약기지'(교육 수료 128명으로 목표 초과), '천원의 아침밥'(식수인원 100% 이상 달성) 등 정량적 추진 목표는 대체로 초과 또는 정상 달성함.

-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인천형 아트페어'로 실제 관람객(6만 명)이 목표(7.5만 명) 대비 80% 수준에 그침.

- 전반적으로 유지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은 질적/장기적 지표가 부재함. 단순 참여·수료 인원 중심의 집계에 편중되어 실제 취업 전환율('청년도약기지')이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지표설정이 미흡함.

○ 계속지원 필요성(3-3)

- 계속지원 필요성(평균 10.55점 / 배점 15점, 득점률 70.3%)을 평가한 결과 사업성과 분야 중 가장 취약한 지표로 나타남. 보조금 지원의 지속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여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현실이나 변화에 맞게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형 아트페어’의 경우 미술품 거래액 규모(연간 80억 원 수준)를 감안할 때 민간 자생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재정 보조의 지속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전국베이스볼5 대회’는 대중적 인지도 및 엘리트 선수 발굴 연계성이 낮고 타 생활체육 종목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여 대회 지원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는 일부 프로그램의 주제 연관성이 약하고 특정 유치원 재원 아동 중심의 폐쇄적 참여 성격을 띠어, 민간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면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표 42]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지표	내용	배점	평균	득점률
3-1	최근 2년 평가점수 종합	20	15.27	76.4%
3-2	성과 달성도	15	11.36	75.8%
3-3	계속지원 필요성	15	10.55	70.3%

Ⅳ 개선방안 및 제언

1. 주요재정사업 운용 제언
2. 지방보조사업 운용 제언
3. 전문가 자문의견 및 제언

1. 주요재정사업 운용 제언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확보 노력 필요

○ 사업계획 단계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2-2. 사업(성과) 계획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라는 지표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표 43] 사업계획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사업계획 (30)	1-1 (10)	1-2 (3)	1-3 (2)	1-4 (5)	2-1 (5)	2-2 (5)
합 계	25.8	8.5	2.8	1.9	4.5	4.4	3.7
(백분위 환산)	85.9	84.6	94.1	95.3	90.1	87.1	**74.4**
투자사업	26.2	8.9	2.8	1.8	4.3	4.8	3.7
(백분위 환산)	87.4	89.3	91.7	88.3	85.3	96.7	**73.7**
행사성사업	25.5	8.2	2.9	2.0	4.6	4.1	3.7
(백분위 환산)	85.0	82.0	95.5	99.1	92.7	81.8	**74.7**

○ 해당 평가지표는 사업(성과)계획 목표가 사업 시행 전에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설정되고 목표치가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도가 반영된 경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임.

○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 단계 타 평가지표 대비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사업 계획 수립 간 목표 설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기인함.

○ 상당수 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

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사업(성과) 목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항목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목표 설정과 관련해 전년도에 작성한 목표를 답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2) 사업관리 단계

□ 사업 진행 간 관리 노력 강화 체계 구축 필요

○ 사업관리 단계 평가 결과는 집행률 부분(3-1)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 간 관리 부분에 있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라는 지표의 평가 점수가 비교적 낮은 수준임.

[표 44] 사업관리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사업관리(35)	3-1(20)	3-2(5)	3-3(10)
합 계	28.7	18.2	3.9	6.5
(백분위 환산)	82.1	91.2	78.8	**65.4**
투자사업	29.3	18.4	4.2	6.7
(백분위 환산)	83.6	92.0	83.7	**66.7**
행사성사업	28.4	18.1	3.8	6.5
(백분위 환산)	81.2	90.7	76.2	**64.7**

○ 해당 평가지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축된 모니터링 체계에서 발견

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평가지표의 특성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점수(10점 만점에 6점)를 받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면 평가 점수가 구조적으로 높을 수 없다는 특징이 존재하나,

○ 해당 지표와 연계된 3-2.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의 평가 결과 또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로 도드라지는 문제점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해 사업 집행 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해 사업 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재정사업의 경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민원이나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이 축적되어 특정 시점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성과/환류 단계

□ 사업 평가 실시 및 환류 체계 확립 및 운영 필요

○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지표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4-3.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임.

[표 45] 성과/환류 단계 평가 지표별 점수

	성과/환류(35)	4-1(15)	4-2(10)	4-3(10)
합 계	22.1	11.0	6.0	5.1
(백분위 환산)	63.1	73.3	60.0	51.2
투자사업	23.6	12.2	6.4	5.0
(백분위 환산)	67.4	81.3	64.0	50.0
행사성사업	21.3	10.4	5.7	5.2
(백분위 환산)	60.9	69.3	57.0	52.0

○ 해당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취지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차년도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환류)을 중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

[표 46] 주요재정사업 평가 항목 비교 (행정안전부 vs 2025 인천)

행정안전부		2025 인천	
단계	평가항목	단계	평가항목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관리 (35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5)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성과/환류 (35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35)

- 그러나 앞서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미진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상당수 재정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까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 사업 종료 후 사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 수행 시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환류이나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함.
- 공공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성과에 대한 인식과 목표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연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
-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집행과 더불어 평가와 환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음.
-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계획서 제출을 차년도 예산 심의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환류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해 볼 수 있음.

2. 지방보조사업 운용 제언

1) 지방보조금 편성

□ 자부담 편성 원칙 확립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매칭 비중은 10% 미만이 71.4%(235건)로 다수를 차지함. 이중 자부담 없는 사업이 190건으로 전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사업 중 전액 시비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이 다수임. 사회복지분야 보조를 제외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최소 10~30% 안팎의 자부담 매칭 규정을 명확히하여 사전 심사 단계에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년 대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조금 감액 또는 일몰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7]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성과평가 기준)

(단위: 건)

자부담 비율	사업수	비율
0%	190	57.8%
1% 이상 ~ 10% 미만	45	13.7%
합계	235	71.4%
총 사업수	329	100.0%

□ 측정 가능한 정량적 성과목표 설정

○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의식 고취’, ‘상권 활성화’ 등 추상적 구호나 단순 참여율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수혜 인원이나 취업·창업 연계율, 참가자 만족도, 교육 후 실무 적용률 등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사업 부서에서 안내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요불급한 비목 사전 점검 강화 및 산출 근거 구체화

○ 지방보조금에서 편성이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 항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심의 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회성 행사 위주 사업은 과다한 운영수당, 매년 반복되는 단복비나 포상금, 단순 소모품 전원 지급, 단체 내부 의전용 경비(의전차량, 내빈용 고가 도시락, 꽃다발) 등은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행사 사업의 경우 과도한 무대 행사 설치 제한

○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혹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서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됨. 단체 내부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무대 설치비나 전문사회자를 초청한 행사 진행, 가수 초대 등 행사 본질보다 행사의 외형이 과대해지는 경우가 다수 포착됨.

○ 민간행사사업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보조금 중 20% 이상을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지방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 방식 엄격화

○ 모든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 기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계좌송금 및 현금성 집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지자체 사전 승인 없는 임의 비목 변경 및 인건비·운영비(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운영, 12월 공공요금 절감분→ 시설 노후 보수 명목 변경 사용) 등에 대한 변경은 사업부서 변경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나, 연말 미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으로 계획과 다른 지출은 부적절하여 엄격한 운영 필요.

□ 정산검사 내실화 및 전자 증빙 완결성 제고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총액 기재 방식을 금지하고 세부 지출결의서, 품의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행사 사진대지, 참석자 서명부 등 완결성 높은 회계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보탬e 전면 사용에 따라 모든 사업의 자료가 증빙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조사업 담당자 면담에 의존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차후 외부 평가시 평가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집행 금지 사항에 대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사후 정산과 환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전 예산 편성과 집행·정산 기준 등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시점에 따라, 해당 교육 불참 시 차기연도 혹은 당해연도 실시 보조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참여 보조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을 통한 교육 참여 유도도 검토 가능함.

○ 적용 가능한 페널티는 공모 심사시 감점(2~5점)을 부여하거나 N회 연속 불참 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정액 감액(200만원) 등임. 인센티브의 경우 교육 수료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가점(2~5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액 추가 교부(100만원) 등도 검토 가능함.

○ 혹은 성과평가 시 해당 항목을 설정하여 교육 이수 보조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도 설계 가능함.

3) 지방보조금 정산 및 운용평가

□ 강력한 상대평가 기준 설정

○ 지방보조사업의 상대평가를 의무화한 목적은 재정환류임.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사업 상대평가 기준은 미흡 이하 등급에 전체 사업의 15% 배정에 그침.

○ 이는 전체 사업 100건 중 15건인 수준이며, 유지필요성 평가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미흡 등급 사업(10%)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지 가능하도록 함.

○ 해당 기준은 대체적으로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환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행정안전부의 상대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본청은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시, 미흡 이하 등급 배정 기준을 30%로 설정하여 운영. 행정안전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4% 사업을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하여 환류함.

○ 또한 해당 기준을 충청남도 산하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교육, 독려하여 관내 보조금 평가 운영 기준을 제시함(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 지방보조금 절감액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히 인천광역시는 산하 구·군의 지방보조금 절감액을 합산하여 자체노력도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청의 기준 상향과 더불어, 군·구에 대한 상대평가 비중 상향 등을 독려하고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편성 시 성과 환류 연계 과정 강화

○ 평가 결과를 예산과 자동으로 연계(Automatic Rules)하는 방식을 통해 성과 환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매우 미흡' 및 유지 필요성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 또는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보통'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 효율성 증대를 모색해야 함.

□ 상대평가에서 일몰 예상 사업 제외하여 평가 실효성 확립

○ 지방보조사업 상대평가 의무화 이후 다수 자치단체에서 미흡 혹은 매우미흡 사업에 자연 일몰 사업을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함. 성과평가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사업비 동결 혹은 감액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만,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는 사업 폐지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제시함.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가 예정된 사업을 상대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실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부산광역시 본청은 성과평가 시 자연 일몰 예정 사업을 별도 조사하여 상대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삭감 및 폐지 등 환류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2024년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4) 2027년 지방보조금 운영 변경 사항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포괄 지원 금지

○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2027년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시 포괄 지원을 금지함.

○ 민간단체 운영비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 두 통계목에 해당하는 사업임. 공익활동과 무관한 비용에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행정안전부는 필요 예산을 특정해서 교부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함.

[표 48]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식감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 (신설)	[별표 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비 관리 강화 ○ 법정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인 지원 금지 ○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운용평가 시에 법인·단체의 활동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2025.1.1.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척 규정 명확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면서 위원의 제척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함.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자체를 제척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임.

○ 이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 7~9항 규정과도 일치함.

「지방보조금법」 제26조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표 49]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신규사업 자체타당성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 (생략) ○ (생략) ○ (신설)	[별표 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산편성 심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제척 필요 ※ (예시) 법정운영비 및 비공모 사업비 보조금 편성 시 해당 단체 임·직원이 위원인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민간인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추가 적용 검토

○ 현행 지방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시 전문가 등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하지만 최근 사업 추진과 별개로 민간인(지역 내 학생,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선심성 국외출장 여비를 지급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언론보도 및 감사에서 확인됨.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민간인 대상의 관행적인 해외연수와 포상성 연수의 예산편성을 제한함.

○ 이는 301(일반보전금) 편성목의 08(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에 대한 제안 사항이나, 다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통계목상 301-08 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 외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혹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지출하는 사례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해당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0]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table>
<tr><th col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안)</th></tr>
<tr><td colspan="2">[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td><td colspan="2">[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td></tr>
<tr><td>편 성 목</td><td>설 정(통 계 목 포 함)</td><td>편 성 목</td><td>설 정(통 계 목 포 함)</td></tr>
<tr><td>301 일반
보전금</td><td>08.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td><td>301 일반
보전금</td><td>08.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 사업수행과 관계없이 민간인(이·통장, 학생 등) 대상 관행적 해외연수(포상적 성격 포함) 편성 불가</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전문가 자문의견 및 제언

1) 개요

○ 인천시의 현황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함.

○ 자문위원은 인천시 소재 대학 소속 교수, 지방재정 연구원 등으로 구성함.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

[표 51]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천연구원 공투자관리센터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박찬열

○ 자문 의견은 수렴 방식은 서면을 활용함.

2) 전년도 평가 결과 환류 반영 현황

가. 자문 의견

□ 평가 결과의 시계열 비교

○ 본 보고서는 2025년 평가 결과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매년 수행하는 평가인 만큼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비교,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내용 등을 보완 서술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주요재정사업 현황

□ 전년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반영 : 유사중복성 검토

○ 2024회계연도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됨.

○ 집행 단계 - 유사중복성 정비 필요

○ 계획 단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집행률 개선 필요

○ 성과 환류 - 단계별 평가 점수 중 성과/한류 부문의 평가 점수가 다른 단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주요재정 사업 평가 결과, 전년도 평가 대상은 209건에서 올해 17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7% 감소. 평가 대상액 또한 395,381백만원에서 205,42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25%가량 감액됨.

○ 이는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사업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사업 평가 결과,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지표인 1-2 항목이 90점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과제: 평가 및 환류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 2024회계연도 평가 결과, 성과/환류 단계의 평가 점수가 다른 단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해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 성과가 일관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함

○ 환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차기연도 사업계획시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함.

○ 2025회계연도 또한 환류 단계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함.

○ 다만, 환류 과정은 단년도의 노력만으로 변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함.

○ 2025회계연도의 제언을 반영해 사업 계획단계에서 성과 목표 설정 시 관행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함.

다. 지방보조사업 현황

□ 전년도 평가 주요 내용 및 반영: 단가 준수 및 산출 근거 명확성 강화

○ 2024회계연도 평가 결과, 다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안됨.

○ (계획) 다수 행사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부적절

○ (계획) 체육진흥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의 행사사업 변경 필요

○ (계획)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강화 필요 - 103건, 전체 31.9%

○ (집행) 현금성 지출 부적절…필요시 자부담 집행 필요

○ (집행) 식비・간식비・피복비 등 단가 미준수…일부 사업 예외 적용 필요

○ (집행) 지방보조금 예비비 편성 부적절…교부신청서 검토 강화 필요

○ (성과 및 정산) 지방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2025회계연도 평가 결과, 계획 단계에서 식비・간식비・피복비 등 단가를 준수한 사례가 증가했으며,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사업이 많아져 관련 지표의 점수가 상향됨.

□ 과제: 현금성 지출 축소와 자부담 편성 비율 확대 필요

○ 2025회계연도 평가 결과, 여전히 현금성 지출이나 자부담 편성 피율이 낮은 문제, 예비비를 편성하는 보조사업자가 발견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제언을 반영해 현금성 지출을 일괄적으로 10% 감액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부담 편성 비율 또한 확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전히 성과 관리 및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비비를 편성하는 보조사업자는 감소했으나, 교부신청서 검토가 필요함

3)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관한 의견 및 제언

○ 당해연도 평가 결과에 관한 의견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모두에 적용되는 제언이 다수로, 향후 사업의 계획·관리·환류를 위해 자문 의견을 요약함.

가. 계획

□ 복지·민생 사업의 공익성과 공정한 접근성 확보

○ 사업의 공익성은 수혜자의 수보다 대상 선정의 정당성, 지원의 필요성, 접근 기회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특정 단체의 사적 편익에 머무는 사업은 재설계하거나 축소·폐지할 수 있지만, 소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몰시켜서는 안 됨.

○ 시와 군·구는 생활권별 서비스 부족과 접근 격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야 함. 이러한 결과를 재원 배분과 공급방식 개선에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함께 강화해야 함.

나. 집행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구축

○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방지: 보조금통합관리망 데이터를 활용해 동일·유사 단체에 대한 다중 지원,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편성을 상시 도출·검증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함.

○ 정산 검증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검증 및 집행실적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 관리 및 환류

□ 성과 · 환류(Feed-back) 단계의 강제성 및 예산 연계 강화

○ 성과지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량 지표(단순 참가자 수, 집행률 외에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수립을 의무화해야 함.

○ 평가 결과를 예산과 자동으로 연계(Automatic Rules)해야 함. '매우 미흡' 및 유지 필요성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 또는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보통'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계획서 제출을 차년도 예산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야 함.

□ 행사성 ·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구조조정 및 일몰제 도입

○ 3년 주기 일몰제(Sunset Clause)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과한 사업만 예산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자부담 비율 확대: 행정·민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엄격히 하고,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

□ 교부세 인센티브 재투자를 통한 재정 선순환 구조 형성

○ 2026년 지방보조금 절감을 통해 확보한 248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일회성 소비 재원이 아닌, 주요 핵심 투자사업 및 재정건전화 기금으로 우선 배분하여 세출 효율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증감과 자부담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 예산 증가는 대상 확대, 보장 수준과 품질 개선, 물가·인건비 상승, 비효율적 비용 증가로 구분해 판단해야 함. 필요한 서비스 확대에는 정당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성과를 내면서 비용만 증가한 경우에는 원인을 점검해야 함.

○ 자부담 비율이 낮거나 감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일몰을 적용하는 방식도 피해야 함. 사업의 공익적 필요와 수행기관의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뒤 적정한 재원분담을 결정해야 함. 시민의 사회적 필요가 지속되는 사업에서는 안정적인 공공지원 자체가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는 조건일 수 있음

□ 원인에 따른 환류와 성장·복지 사업의 공동 성과관리

○ 평가결과는 감액뿐 아니라 확대·통합·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조치로 연결돼야 함. 필요성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를 검토하되, 필요성은 높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은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함. 자료 부족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과 성과 조사를 보완하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성장과 복지의 연결이 중요한 사업에는 공동 목표, 책임부서, 협력부서, 연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년 훈련·기업 채용·생활 지원, 돌봄 공급·종사자 처우·가족 고용 지원 등을 연계하고, 개별 사업 실적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고용이 함께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함.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이러한 사업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는 안정적 재원 조달을 포함한 중기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함.

4) 향후 지표 설계 관련 보완점

□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통계목별 차등 평가

○ 평가지표 설계시 통계목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한 것은 본 과제에서 설계한 평가체계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통계목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평가 설계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고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별화된 평가 설계의 결과에 대한 서술도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평가의 목적이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개선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측정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

○ 또한 차년도 평가에 전년도 평가의견에 대한 환류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집행 · 산출 중심에서 생활 변화와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 보완

○ 참여 인원과 교육 횟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을 보완해야 함. 청년지원은 취업 여부와 함께 고용유지・임금・근로조건을, 생활 지원은 필수 생활비 부담과 미충족 수요의 변화를, 돌봄 사업은 서비스 접근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배점도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정하되, 단순히 정량 지표를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함. 규모가 크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비교 집단과 추적 조사를 활용해 다른 요인의 영향을 구분하고, 소규모 사업은 행정 자료・이용자 조사・사례분석을 결합하는 등 사업의 성격과 평가비용을 고려해야 함.

부록. 전문가 자문의견 원문

1. 강병구 교수
2. 윤홍식 교수
3. 박찬열 연구원

2026년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검토 의견서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2026.9.4.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수행한 2025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170건) 및 지방보조사업(340건) 총 510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최종 결과이다.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단순하고 형식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o 평과결과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고도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최종 결과 수용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구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환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본 용역과제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로부터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인천광역시는 본 연구의 주요 쟁점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개선방안을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과의 제고는 물론, 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I. 보고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 격차 심화 (계획・관리 vs 성과・환류)

- 현황 및 문제점: 백분위 환산 평가 결과, 사업계획(85.9점) 및 사업관리(82.1점) 단계는 '우수'한 수준이지만, 성과/환류(63.2점) 단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쟁점: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관리하는 절차는 정착되었으나, 사업 완료 후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적사항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환류)하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2. 행사성 사업의 낮은 성과 및 관행적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평가 대상 중 투자사업(평균 79.1점, 우수 이상 31.7%)에 비해 행사성 사업(평균 75.2점, 우수 이상 13.6%)의 성과가 크게 낮게 나타났음.

- 쟁점: 선심성・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지자체 행사・축제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 없이 예산이 반복 편성・집행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3. 지방보조금의 경직성 증가 및 높은 민간경상보조 비중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인천시 지방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6.88%로, 전체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4.44%)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0.7%를 차지.

- 쟁점: 지방보조금은 한 번 신설되면 기득권화되어 경직성 경비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재정 유연성을 저해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높음.

4. 평가 등급 산정과 예산 연계(환류)의 실효성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전체 주요재정사업의 67.1%가 '보통'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력이 다소 낮음.

- 쟁점: 행정안전부 기준(미흡 이하 12.9% 등)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등급 배분에 그칠 경우, '보통' 등급에 속한 많은 사업들이 사업 구조조정이나 예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평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Ⅱ.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1. 성과·환류(Feed-back) 단계의 강제성 및 예산 연계 강화

- 성과지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량 지표(단순 참가자 수, 집행률 외에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수립을 의무화해야 함.
- 평가 결과를 예산과 자동으로 연계(Automatic Rules)해야 함. '매우 미흡' 및 유지 필요성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 또는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보통'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
-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계획서 제출을 차년도 예산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

2. 행사성·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구조조정 및 일몰제 도입

- 3년 주기 일몰제(Sunset Clause)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과한 사업만 예산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자부담 비율 확대: 행정·민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엄격히 하고,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

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

3.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구축

-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방지: 보조금통합관리망 데이터를 활용해 동일·유사 단체에 대한 다중 지원,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편성을 상시 도출·검증하는 시스템을 정착.
- 정산 검증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검증 및 집행실적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집행 투명성을 확보.

4. 교부세 인센티브 재투자를 통한 재정 선순환 구조 형성

- 2026년 지방보조금 절감을 통해 확보한 248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일회성 소비 재원이 아닌, 주요 핵심 투자사업 및 재정건전화 기금으로 우선 배분하여 세출 효율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서」 검토의견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별 집행과 정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성과관리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정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민생, 복지 확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도 평가 기준과 제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결과를 인천시 전체 성장전략과 복지정책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하의 의견은 보고서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짚고, 그 결과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1. 평가

1) 지방분권과 민생: 지역의 필요와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가?

최근 5년간 인천시의 민간 지방보조금 편성액 연평균 증가율은 6.88%로, 같은 기간 세출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인 4.44%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만으로 민생 개선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로 보조금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인구와 정책 수요, 물가, 서비스 공급의 부족 등을 함께 고려해 지출 증가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51쪽).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보조사업은 특정 단체 회원이나 내부 관계자

를 중심으로 운영돼 공익적 수혜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3쪽). 이는 사업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공익성 부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나 도서 지역 주민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수혜 규모가 작더라도 공공적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단체 구성원의 사적 편익을 위한 폐쇄적 지원과 사회적 필요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평가지표를 조정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군·구의 상이한 정책 수요, 시민의 평가 참여, 지역 간 서비스 접근 격차가 평가와 예산 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원도심·신도시·도서지역의 생활 여건이 다른 인천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다를 수 있다. 지역의 필요를 반영할 자율성과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2) 복지 확대: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가?

재정사업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 확대의 성과는 지출 규모뿐 아니라 보장 범위와 수준, 접근성,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고서는 교육 횟수와 참가자 수 등 추진 실적은 달성됐지만, 수혜자의 역량 향상이나 구체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수혜자 만족도 항목의 득점률도 69.8%에 머물렀는데, 이는 실제 시민 만족률이 아니라 조사 실시와 자료 제시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이다. 상당수 사업에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은 시민의 생활 개선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74~75쪽). 이러한 측정의 한계를 곧바로 복지 효과의 부재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시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복지 확대와 충돌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보고서는 ‘천원의 아침밥’과 ‘청년도약기지’의 전년 대비 보조금 증가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80쪽). 그러나 예산 증가는 수혜자 확대, 서비스의 질 개선, 물가와 적정 인건비의 반영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증가와 비효율적인 비용 증가를 구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 규모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면 필요한 민생・복지 사업의 확대가 불리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

자부담 역시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부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관행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속적인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사업은 공공재원으로 반복 지원할 정당성이 있다. 자부담률의 적정성은 공익성, 수익 창출 가능성, 수행기관의 재정능력,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3)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정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평가하려면 두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하나는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임금과 고용 안정, 공공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돌봄・주거・건강・소득보장이 생활의 불안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가이다. 다만 성장에 기여하는지와 별개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의 독립적인 목적이라는 점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보고서는 개별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평가하지만, 성장사업과 복지사업이 서로의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집행됐는지는 충분히 분석하지 않는다.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는 것과 사업 간 상호보완성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과제이다. 기업지원과 청년 훈련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돌봄 지원이 가족의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를 뒷받침하는지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업관리 단계 환산 점수는 82.1점인 반면, 성과・환류 단계는 63.2점이다. 특히 평가 결과와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반영했는지를 보는 항목은 51.2점으로 가장 낮다(35쪽, 표 14; 39쪽). 이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환류의 미흡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부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선순환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업 간 연결구조와 공동 성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2. 제안

1) 집행·산출 중심에서 생활 변화와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 보완

- 참여 인원과 교육 횟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청년지원은 취업 여부와 함께 고용유지·임금·근로조건을, 생활 지원은 필수 생활비 부담과 미충족 수요의 변화를, 돌봄 사업은 서비스 접근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성과지표의 배점도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정하되, 단순히 정량 지표를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규모가 크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비교 집단과 추적 조사를 활용해 다른 요인의 영향을 구분하고, 소규모 사업은 행정 자료·이용자 조사·사례분석을 결합하는 등 사업의 성격과 평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2) 복지·민생 사업의 공익성과 공정한 접근성 확보

- 사업의 공익성은 수혜자의 수보다 대상 선정의 정당성, 지원의 필요성, 접근 기회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사적 편익에 머무는 사업은 재설계하거나 축소·폐지할 수 있지만, 소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몰시켜서는 안 된다.

- 시와 군·구는 생활권별 서비스 부족과 접근 격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재원 배분과 공급방식 개선에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예산 증감과 자부담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 예산 증가는 대상 확대, 보장 수준과 품질 개선, 물가·인건비 상승, 비효율적 비용 증가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 확대에는 정당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성과를 내면서 비용만 증가한 경우에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

- 자부담 비율이 낮거나 감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일몰을 적용하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적 필요와 수행기관의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뒤 적정한 재원분담을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사회적 필요가 지속되는 사업에서는 안정적인 공공지원 자체가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는 조건일 수 있다.

4) 원인에 따른 환류와 성장·복지 사업의 공동 성과관리

- 평가결과는 감액뿐 아니라 확대·통합·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조치로 연결돼야 한다. 필요성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를 검토하되, 필요성은 높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은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자료 부족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과 성과 조사를 보완하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성장과 복지의 연결이 중요한 사업에는 공동 목표, 책임부서, 협력부서, 연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훈련·기업 채용·생활 지원, 돌봄 공급·종사자 처우·가족 고용 지원 등을 연계하고, 개별 사업 실적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고용이 함께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이러한 사업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는 안정적 재원 조달을 포함한 중기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아울러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에 활용하기 전에 보고서의 수치와 산식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별 합계, 일부 평가점수의 환산값, 지방 보조사업 등급별 건수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사업별 원자료와 대조해 검증해야 한다. 정확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공익성과 시민의 생활 변화를 함께 판단할 때, 재정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면 자문 의견

(인천연구원 박찬열, 2026.09.02.)

■ 과제명 : 2026년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 종합의견

-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한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임
- 평가절차를 서면평가, 대면평가, 이의제기 단계로 체계화하고, 인천시 환경에 맞게 평가지표를 재설정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제도적 함의까지 제시하고 있음
- 매년 수행하는 평가인 만큼 연차 평가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년도 평가와의 비교, 올해 평가 세부 의견에 대한 사업부서 보완 및 차년도 평가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세부 의견

1)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통계목별 차등 평가

- 평가지표 설계시 통계목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한 것은 본 과제에서 설계한 평가체계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통계목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평가 설계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고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별화된 평가 설계의 결과에 대한

서술도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2) 평가 결과의 시계열 비교

- 본 보고서는 2025년 평가 결과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매년 수행하는 평가인 만큼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비교,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내용 등을 보완 서술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평가 결과의 활용

- 본 보고서에는 전체 평가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으나, 각 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지표별 점수와 평사사유 등은 사업부서에 제공하여 사업 추진의 보완 및 차년도 평가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평가의 목적이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개선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측정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
- 또한 차년도 평가에 전년도 평가의견에 대한 환류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4) 본문 서술 오류

- 본문 내용 서술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하여 수정 요함
- p.34 이하 내용에 백분위 환산 점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서술하고 있는데, 백분위 환산식을 제시하고, 환산점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환산점수는 지표별 ‘득점/배점*100점’ 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환산 점수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임

- p.32 본문에 “미흡 등급이 많이 부여된 실국은 문화체육국으로 4개의 사업이 ....” 등으로 기재된 내용은 부서별 평가결과에 대한 핵심 서술인데, 정리된 표의 내용과 상이함
- p.52 본문에 “4곳의 자치단체 만이 인천광역시보다 지방보조금 편성 비중이 높음..” 은 오히려 편성 비율이 낮은 곳들임
- 그 외 [표 7] 합계, [표 34]와 [표 35] 보통 건수 불일치 등 재검토 필요

5) 오탈자 수정

- 오탈자가 다수 확인되므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오탈자 사례: 잇으며, 건정성, 41.7.1%, 지ㄴ방보조금, 보조급, 보템e, 체게적, 카드매추런표, 일르 등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TEL. 02-336-0619 FAX. 02-336-0619